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3년 8월

碩士學位論文

한 · 중 무역 분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전 곤

한 · 중 무역 분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sponding Strategies of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2013년 8월 20일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전 곤

한 · 중 무역 분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指導教授 朴魯慶

이 論文을 經濟學碩士 論文으로 提出함.

2013년 8월

朝鮮大學校 大學院

貿易學科

전 곤

전 곤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委員長	조선대학교 교수	<u>이제홍 (인)</u>
委 員	조선대학교 교수	<u>김석민 (인)</u>
委 員	조선대학교 교수	<u>박노경 (인)</u>

2013년 8 월

朝鮮大學校 大學院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한 중 무역 분쟁 연구의 의의	3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3
제2장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및 특징	4
제1절 한 중 무역 현황	4
1. 한 중 무역 현황	9
2. 중한무역의 발전단계	11
3.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	16
제2절 한 중 무역의 특징	17
1. 양국 간 무역 구조변화	17
2. 한중 무역상품별 구조변화	17
3. 한중교역의 신속한 성장속도	18
4. 한중 교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	18
제3장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19
제1절 한중 무역의 문제점	19
1. 중국대 한국 무역적자의 확대 및 양국 무역형태의 불균형	19

2. 한중 무역경쟁의 심화	20
3. 높은 원부자재 비중	20
4.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21
5. 저렴한 중국 농산물	22
6. 중국 측의 높은 관세장벽	22
7.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	23
8. 중국의 생산력 증가	23
9. 양국 간 분업 구조 진전으로 인한 역수입	24
10. 한국 기업의 중국 직접투자 비중 증가	25
11. 특정품목에 지나친 수출 의존도	25
제2절 한중 무역 분쟁의 종류	26
제3절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27
1. 한국의 무역 분쟁의 현황	28
2. 중국의 무역 분쟁 현황	30
2.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31
제4장 한중 무역 분쟁의 사례분석	33
제1절 품질에 관한 무역 분쟁	33
1. 품질불량을 구실로 한 대금결제 거부한 클레임 사례	33
2. 품질 상이 무역 분쟁 사례	34
3. 물품의 하자에 의한 무역 분쟁 사례	35
4. Undervalue한 물품 대금 차액의 미지급 분쟁 사례	36
5.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	37
제2절 계약 불이행 에 관한 무역 분쟁	38
1. 계약 불이행 분쟁 사례	39
2. 계약 성립조건에 대한 분쟁 사례	40
3. 계약이행을 거절한 분쟁 사례	42

4. 물품매매계약상 미지급물품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분쟁사례	44
5.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 잔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사례	45
6.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에 관한 사	47
제3절 다른 원인에 관한 무역 분쟁 사례	49
1. 규격이나 검사기준차이 분쟁 사례	49
2. 선적 및 납기불이행 클레임 사례	50
3.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	52
4.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	53
5. 결제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급을 거절한 클레임 사례	55
제5장 한중 무역 분쟁의 시사점 및 대응 방안	56
제1절 한중 무역 분쟁의 대응 방안	56
1.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57
2. 계약서의 전면적으로 작성	58
3. 국제거래관행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	59
4. 표준중재조항의 활용	60
5.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61
제2절 정부 입장의 대응방안	62
제6장 결론	63
참 고 문 헌	66

표 목 차

<표 1> 한중 수교 이후 무역규모의 변화 추이	8
<표 2> 한국의 주요 교역국 현황(2011년 기준)	9
<표 3> 1980-1991년 한·중 무역 발전추세	12
<표 4> 1992-1999년 한·중 무역발전추이	14
<표 5> 2000년 이후 한·중무역의 발전변화	14
<표 6> 무역 분쟁 및 클레임의 종류	26
<표 7> 대한상사중재원 무역 분쟁 접수 현황(2010년)	28
<표 8> 대한상사중재원 무역 분쟁 접수 현황(2011년)	29
<표 9> 무역 분쟁 다발국가별 현황(2009년)	30
<표 10>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접수현황(2008-2011년)	30
<표 11> 표준중재조항	61

그 립 목 차

[그림 1] 중한 수출입총액의 증가율(1992년~2011년)	15
[그림 2] 중국 대 한국 무역적자 추이	19

ABSTRACT

A Study on the Implications and the Responding Strategies of Trade Disputes between Korea and China

Qian, Kun

Advisor: Prof. Park Ro-Kyung Ph. D.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With the continuous updating of knowledge, the non-stopping progress of society and the development of economic, communications and contracts, especially the economy and trade connections between countries increase quickly during 21century.

The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remarkably developing during the 21 years since Korea and Chin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hip.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ir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South Korea and China, two eastern Asian-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relationship in such areas as economic, trade, education, culture of Science and Technology with an amazing speed. Amount these areas, the economic and trade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ch is of no worth of mentioning from the volume of trade at the beginning of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has develop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close trading partners to

each other.

However,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trade claim occurred all the times. Especially during recent years, the frequency of trade disputes's occurrence continues to show an upward tendency. This situation is significantly blocking progress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resolving trade claims by arbitration has important meanings for the long-term stabl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My main purpose in this paper is to make a clearer explanation of causes of these claims than ever made before, and to find solutions of and preventive measures to such kind of claims. The causes of the claims aroused in Korea trade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namely, the direct ones and the indirect ones. The former is that the contracts made by the sellers and buyers has not been fully conducted according to its articles such as quality, quantity, packaging, price,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the way of paying, while the later are those indirect factors such as the differences between buyer and seller's languages and cultural backgrounds, their judicial and commercial habits, and the factors such inadequacy of credit investigation, those dangers in transportation process, force majeure and such conditions as the contract could not be carried out.

To solve these claims I have in my paper put forward some schemes and preventive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ose cause mentioned before. The schemes are two. The first one is that the partners solve their trouble by themselves, and the next one is that they solve it by a middleman. The later scheme can also be divided into four ways, namely, 1) to intercede, 2) to conciliate, 3) to arbitrate, 4) to litigate. Among these measures, the third is mostly adopted because of its quickness in time, low expanses, secrecy and authority.

The best way to solve claims is surely to prevent it from happening. I have put forth 4 preventive measures, of which the first is to use language correctly and act according to the commercial habits; the second is to investigate the

oversea commercial environment and the counter part's credit fully, the third is to make an accurate contract, and the forth is to control the product quality strictly.

Lastly, One must conform to the set contract and to the rules settled international standard made by mutual credit to adapt to globalizing business.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will even more accelerated if this custom settles, and Korea and China will both become the center of East-Northern Asian econom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992년 8월24일 한 중 수교이후 양국정부가 여러 가지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을 맺었고 경제무역기술위원회를 설립하였다. 정부층면으로 보면 양국지간의 합작은 양국 경제무역 발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였다.

1992년 이전의 한중무역은 주로 중국홍콩 중국대만과 같은 제3나라와 지역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었다. 양국의 수교함에 따라 양국무역은 직접무역계단에 들어섰다. 이에 인하여 양국 무역은 직접무역계단에 들어섰고 양국관계도 정상적인 과도에 들어섰다. 1992년 중한무역총액은 50.3억 달러에 달았고 2003년에는 632.2억 달러, 12년간 12.6배 성장하였고 년 평균성장속도는 25.9%이다. 이 기간에 중국대외무역은 5.14배 성장하였고 년 평균 성장률은 16.1%이고 한국의 대외무역은 2.35배로 성장하였고 년 평균 성장률은 8.1%이다. 이로 보면 한중무역의 발전은 자국의 무역 발전 속도 보다 많이 앞섰다.

지속적 이고 쾌속적인 양국 무역발전에 따라 양국은 서로간의 중요한 무역국으로 되었다. 2002년에 한국은 중국의 7대 무역국 이었으며 6대 무역 수출국 또한 5대 무역수입국으로 되었다. 2003년에 한중무역액은 중국과 중국대만의 무역액을 초과하여 중국의 6대 무역국으로 되었으며 중국도 한국의 무역국 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2002년에 중국은 일본을 초과하여 한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국으로 되었고 한국의 제2수출시장으로 되었다. 2003년에 또 미국을 초과하여 한국의 제일 큰 수출시장으로 되었다. 또한 2007년에 연간 총 무역액은 1405억 달러에 달았고 1992년부터 15년간 20여배 성장하여 2007년말 까지 중국은 한국의 제일 큰 무역국으로 되었으며 제일 큰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되었다.

중국은 최근 주요 세계시장에서 연이어 통상 분쟁에 휘말리면서 무역방식의 전환과 함께 수출산업 구조의 획기적 재조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한국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의 중국산 가죽신발, 컬러 TV 등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미국과 EU의 수입 자동차부품 고율관세 부과에 대한 제소 결정 등으로 주요 무역상대국과 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중국 상품이 전 세계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을 수는 없지만, 지금의 통상 분쟁은 그런 차원을 넘어,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 전문적 시각이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1년 동안 WTO 회원국 제소한 반덤핑 사례의 약 17%는 중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또한 WTO 회원국 가운데 반덤핑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과의 통상 분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EU를 비롯하여 인도,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개발도상국들도 중국 상품으로 국내 산업이 교란되고 있으며 무역 중재 및 구제조치를 위한 조사와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외국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투자와 생산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국내시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생산된 제품을 수출로 소진할 수밖에 없어 통상 분쟁이 잦아지고 세계 최대의 반덤핑 대상국이 되는 구조적 여건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중국은 한국과 산업 보완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무역분쟁, 환경문제 그리고 자원제약으로 인해 공업, 투자 그리고 수출을 기반으로 하는 경쟁자로서의 문제점이 날로 커지고 있다. 중국은 국내의 기존 정책으로 거시적인 통상 문제들은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나 외부적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서비스 부문과 노동 집약적 산업 우위의 무역 분쟁에 따른 새로운 통상 정책을 모색할 것이 요구된다. 얼마 전 한국의 대표적 식품인 중국산 김치에 대한 비위생적이라는 정당한 보도는 식품안전을 거론한 것이지만, 이는 한국산 휴대전화, 자동차 등 공산품의 수입규제로 이어져 한 중 무역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은 항상 잠재해 있음을 보았다.

이와 같이 21세기가 열리며 한 중 무역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나, 그만큼 양국의 통상 분쟁 및 갈등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양국의 통상당국은 국제적 기준에 충실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협력모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후발 산업국의 경제 개발에서 나타나는 국가 지원적(state-facilitated)경제발전 정책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2000년 이후 한 중간의 무역거래 분쟁사례를 개관하며 분쟁의 원인, 유형 및 처리과정상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아가 한국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및 예방을 위하여 목적을 두었다.

제2절 한 중 무역 분쟁 연구의 의의

한·중 무역의 역사연혁과 계기로부터 출발하여 상세하고 사실적인 권위 수치자료들을 의거로 한·중 양국 무역의 현황과 특징들을 분석하였다. 한·중 무역과정에서 존재하는 각종 문제들을 연구 토론하는 것을 통하여 한·중 무역의 발전이 직면한 기회와 도전들을 논증하기에 힘써 한·중 무역의 과거와 미래 경제협력 발전의 기본 사료와 중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한·중 경제협력이 더 높은 단계로의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공헌을 하였다.

동시에 본 논문의 연구는 상관된 기능부문이 한중 무역분쟁의 해결에 관한 과학적인 정책을 결정하도록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여 한중 양국관계의 안정된 발전을 촉진시켰고 양국의 무역협력에 화목한 환경을 마련하여 양국을 공동번영하고 우호협력 하는 효과에 도달하려고 한다. 한반도의 정세가 아세아와 태평양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갖는 특수한 의의를 감안하면 한중 무역은 동북 아세아 지역의 안정적인 국면을 촉진 할 수 있다. 하나의 안정된 무역환경은 각자의 무역전을 더욱 촉진 할 수 있으며 경제세계화와 지역경제 일체화라는 시대배경과 영합하였고 오늘날 세계의 "평화와 발전" 이란 시대 주제와도 부합되기 때문에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갖고 있다.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한중 무역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한중 무역의 배경과 추진과정에 대한 특징들을 검토하고, 한중 무역의 현황 및 한중무역 분쟁의 현황 시사점과 무역 분쟁의 해결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문헌연구의 실증자료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한 중 무역 분쟁의 원인과 유형 및 해결방안에 의한 정책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하였다.

먼저 제1장 서론에서 연구의 배경과 목적 및 연구의 방법과 구성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제2장에서는 먼저 제1절에서 한 중 무역 분쟁 연구의 의의를 서술하였고 제2절에서는 한 중 두 나라간의 무역현황에 대해 서술하였고 제3절에서는 한중무역특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선 제1절에서 한중무역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하게 요해하고 제2절에서는 한중 무역 분쟁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3절에서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4장에서는 한중 무역 분쟁의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제1절에서는 한중간의 대표적인 무역 분쟁인 마늘분쟁을 서술하였고 그다음 절에서는 김치분쟁이 일어나게된 원인과 결과를 서술하였고 3,4절에서는 품질에 관한 무역 분쟁과 계약 불이행에 관한 무역 분쟁의 사례들과 그 결과 및 해결대책에 대해 서술하였다. 그리고 제5절에서 다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무역 분쟁들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1절로 한중 무역 분쟁의 시사점에 대해 간단하게 서술하고 제2절과 제3절에서는 한중 무역 분쟁의 대응방안 및 정부 입장의 대응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서술하였다.

마지막은 제6장 결론이다.

제2장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및 특징

제1절 한 중 무역 현황

1. 한 중 무역 현황

가. 1992년 수교부터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이전까지

1992년 중·한 두 나라가 외교관계를 건립해서부터 양국의 무역협력은 빠른 발전을 가져왔는데 한·중 양국의 무역관계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극히 중요하기까지 근근이 10여년이란 시간밖에 들이지 않았다. 두 나라의 무역액은 1992년의 50.2억 달러로부터 2004년의 900.7억 달러까지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27%에 이르렀으며

증폭은 18배나 된다.¹⁾

1992년, 한국이 중국에 수출액은 근근이 26.5억 달러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것은 전체 수출의 4%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2004년에는 44.3% 뛰어오른 622.5억 달러에 이르렀고 중국에 대한 수출규모도 23.8배 증가하였으며 1992년 중국수출의 점유율은 한국수입총량의 5%밖에 되지 않았지만 2004년에는 38.4%에 이르렀다.

1992년 중국은 한국의 5번째 큰 무역 파트너였지만 2004년 7월, 중국은 이미 한국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로 되었고 1992년 한국은 중국의 7번째 가는 무역파트너였지만 현재 한국은 이미 중국의 3번째로 큰 무역파트너로 되었다.²⁾

그러나 두 나라 무역의 증가는 정책변화의 영향을 쉽게 받는데 파동성이 크고 위험에 맞설 능력이 약했다. 1994년 중국 인민폐 환율의 단일화와 새로 수출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실행한 것은 1995년 상반기에 두 나라의 무역 증장을 절정에 이르게 하였다.

뒤이어 중국이 두 차례에 걸쳐 수출시 세금을 돌려주는 비율을 낮춘 것과 국제시장의 원료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아 두 나라의 무역증가율은 1995년의 44.9%로부터 1996년의 17.7%로 급격히 하락하였다.³⁾

나. 한국 외환위기 이후

아세아 금융위기의 충격을 받아 한국경제는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수출입 수요도 급격히 하락 되었으며 한국은행이 신용장 발급을 엄격히 제한한 것은 1998년 두 나라의 무역이 내리 막 길을 걷게 하였는데 한·중 무역은 처음으로 부 성장치를 나타냈고 하락폭은 11.6%에 달했다.

그러나 아시아시장 무역의 전면 반등으로 2000년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 증폭은 52.9% 이며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역시 41.1% 증가하였는데 2003년에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증폭은 또 29.4% 올랐으며 한국이 역시 중국에 대한 수출이 51% 증가하였다.⁴⁾

중국 상무부의 최신통계 (2004년)에 따르면 한·중 양국의 수출입 무역총액은 900.7

1) 이영·양진우(2005), 「시사 속람, 시대무역출판사」, p. 12.

2) 맹경의·유뢰(2004), 「중·한 무역협력의 현상 및 그 과거」, 세계경제출판사, p. 49.

3) 양림림(2004), 「중·한 무역협력의 대책연구를 강화, 흑룡강사회과학출판사」, p. 80.

4) 양림림, 상계논문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42.5% 증강하였으며 그중 중국의 수출액은 278.2억 달러, 수입액은 622.5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각각 38.4%, 44.3%의 증가율을 보였다.⁵⁾

2005년 1/4분기에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27% 증가하였다. 상무부장 박희래는 "2005년 한·중 경제협력평론"에서 2010년까지 한·중 양국의 무역규모는 1500억—2000억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한·중 양국의 무역협력이 부단히 새로운 진전을 가져오는 동시에 두 나라의 무역불균형은 끊임없이 확대된다는 것이다. 중국 거액의 무역역조는 증가세를 멈출 줄 모르고 역조규모는 해마다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1999년 중국의 무역역하는 4.2억 달러로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총액의 54.7%를 차지했는데 2003년에 이르러 중국이 한국에 대한 무역역조는 230억 달러로 전년도에 비해 75.8% 증가하였으며 중국이 한국에서 수입한 상품총액의 53.3%를 차지하였다.⁶⁾

2004년 중·한 두 나라의 무역과정에서 중국 측의 역하는 344.3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대비해 49.6% 증가하였으며 2004년 연말까지 중국 측 역차의 누계총액은 이미 1314.9억 달러에 달하였는데⁷⁾ 무역불균형은 이미 두 나라 무역의 협력과정에서 가장 주요하고 돌출한 문제로 되었다.

2004년과 2005년의 평균통계수치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무역은 대부분 가전제품과 전자제품(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총액의 24.9%를 차지), 방직복장(20.9%), 농어업제품(12.2%)에 집중 되었다.

더 많은 부문의 통계수치를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은 패션(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총액의 13.5%를 차지), 강철과 갈철제품(10.0%), 방직제품 (7.4%), 화학공업제품(6.9%), 컴퓨터(4.4%), 통신설비(4.4%)와 혼합제품(5.3%)의 점유율이 비교적 컸다.

한·중 두 나라 관련무역의 강도—즉 한 나라의 여러 부문이 다른 한 나라의 쌍무수출과 그 나라의 세계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데—한국의 농어업제품(2.43), 석유연료(2.73), 방직복장(1.21), 광업목재(1.23), 강철과 강철제품(1.73), 반도체(1.65)와 기타 교통설비(1.1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5) 애화(2005), 「대책 중에서 전진—중·한 무역 핫이슈투시」, 시대무역출판사

6) 주중국·황동매(2004), 「중·한 무역 역차분석 및 개선구상」, 현대재정출판사, p.58

7) 주중국, 화동매, 상계논문, p.60.

다른 한 방면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전자전기제품(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총액의 35.3%를 차지), 화학공업제품(19.8%), 강철과 강철제품(10.4%), 정밀기계(9.7%), 석유와 연료(5.3%), 방직복장(9.0%)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보다 광범한 기타 부문에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통신설비(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총액의 10.0%를 차지), 컴퓨터(9.4%), 방직제품(8.2%), 기계(8.1%), 반도체(3.6%), 자동차 부품과 부속품(2.7%), 광산물과 목재(2.4%)와 기타 각종 제품(2.7%) 등에서 나타났다. 산국에 중국에 대한 관련무역 강도는 신(2.51), 석유연료(1.39), 강철과 강철제품(1.56), 정밀설비(1.17)와 혼합제품(1.21)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⁸⁾

과거 14년 동안, 한국의 무역조성에는 대단한 변화들이 나타났다. 1992년 강철과 기타 금속재료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33%를 차지하여 주요지위에 올랐고 그 다음은 18%로 전자와 기계가 차지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 이르러 전자와 기계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53%로 제 1위를 차지하였고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디지털 전자제품은 36%(USD12억에 도달)로 증가하였다.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조성에서 12%는 소비품이고 42.8%는 자본이며 45.2%는 중간제품이다. 한국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구조도 변화를 가져왔는바 1992년 농산품이 2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지만 2005년에 이르러 전자제품과 기계가 5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하였으며 농산품은 9% 하락하였다.

과거 14년 동안 중국이 한국에 대한 수출에서 가전제품은 17배 증가하여 현재는 한국에서 이런 유형을 수입하는 총액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칭 주파수 설비의 수입 역시 25% 증가하였다. 중국의 하이얼, TCL을 시작으로 한 내용 소비품 회사들은 한국에서 그들의 주요 브랜드 제품을 팔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면 TCL은 까르푸 한국지점을 통하여 그들의 평면TV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 등이 있다.

2005년 한국이 중국에서 구매한 농산품은 3.6억 달러를 초과하여 그 농업항목에서 수입이 최대 내원으로 되게 하였다. 해운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중국농민 역시 한국을 선호하였는데 그들은 중국 보리의 98%, 옥수수의 56%와 밀의 30%를 한국에 수출하고 있다.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건립한 이래, 가장 뚜렷한 변화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하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이 된 것이다. 2003년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은 처음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한 수출을 초과하였고 이런 추세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8) 맹경의·유뢰(2004), 「중·한 무역협력의 현상 및 그 과거」, 세계경제출판사, p.49.

상태이다.

<표 2-1>한중 수교 이후 무역규모의 변화 추이 (단위: 억 달러, %)

년도	수출 금액	증가 율 (%)	수입 금액	증가 율 (%)	무역수지
1990	5.8	33.7	22.7	33.1	-16.8
1991	10	71.4	34.4	51.7	-24.4
1992	26.5	164.7	37.2	8.3	-10.7
1993	51.5	94.1	39.3	5.5	12.2
1994	62	20.4	54.6	39	7.4
1995	91.4	47.4	74	35.5	17.4
1996	113.8	24.4	85.4	15.4	28.4
1997	135.7	19.3	101.2	18.5	34.6
1998	119.4	-12	64.8	-35.9	54.6
1999	136.8	14.6	88.7	36.7	48.2
2000	184.5	34.9	128	44.3	56.6
2001	181.9	-1.4	133	3.9	48.9
2002	237.5	30.6	174	30.8	63.5
2003	351.1	47.8	219.1	25.9	132
2004	497.6	41.7	295.8	35	201.8
2005	619.1	24.4	386.5	30.6	232.7
2006	694.6	12.2	485.6	25.6	209
2007	819.9	18	630.3	29.8	189.6
2008	913.9	11.5	769.3	22.1	144.6
2009	867	-5.1	542.5	-29.5	324.6
2010	1168.4	34.8	715.7	31.9	452.6
2011	1341.9	14.8	864.3	20.8	477.5

자료: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成鉞"韓國 과 中國間 商事紛爭 解決에 관한 研究" 2013.2

<표2-2> 한국의 주요 교역국 현황(2011년 기준) (단위 :억 달러)

순위	국가명	수출 금액	비중	수입 금액	비중	무역수지 금액
	총계	5552.1	1	5244.1	1	308
1	중 국	1341.9	0.24 2	864.3	0.16 5	477.5
2	미 국	562.1	0.10 1	445.7	0.08 5	116.4
3	일 본	396.8	0.07 2	683.2	0.13	-286.4

4	홍콩	309.7	0.056	232	0.004	286.5
5	싱가포르	208.4	0.038	897	0.017	118.7
6	대만	182.1	0.033	146.9	0.028	351
7	인도네시아	135.6	0.024	172.2	0.033	-365
8	베트남	134.6	0.024	508	0.01	838
9	인도	126.5	0.023	789	0.015	476
10	브라질	118.2	0.021	634	0.012	548
11	러시아	103	0.019	108.5	0.021	-547.29
12	멕시코	973	0.018	232	0.004	741
13	독일	950	0.017	169.6	0.032	-746
14	태국	846	0.015	541	0.01	305
15	호주	816	0.015	263.2	0.05	-181.5
16	라이베리아	739	0.013	127	0	739
17	필리핀	734	0.013	357	0.007	377
18	아랍에미리트	727	0.013	147.6	0.028	-749
19	마셜군도	705	0.013	588.9	0.001	699
20	사우디아라비아	696	0.013	369.7	0.07	-300

자료: <http://politicstory.com>

한국의 주요 교역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은 2002년 이후 미국을 추월하여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2011년까지 연속 9년간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 되었다.

수입 면에서 수교 당시 중국은 한국의 제6위 수입대상국이었으나 2006년 부터 일본을 초과하고 한국의 최대 수입 시장으로 등극했다. 현재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입 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과 한국간의 무역은 1998년 IMF때와 2009년 전 세계적인 경기침

체시기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을 제외하고, 교역규모는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011년 기준 한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47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2011년 무역수지가 308억 달러 흑자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국이 한국의 무역 흑자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깊을 듯하고, 실제로 일부 중국의 관리들은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⁹⁾

2012년 5월 13일 중한일 삼국간의 제5차 회의가 중국 북경에서 열렸다. 중국 총리 문가보(温家宝), 한국 대통령 이명박, 일본 수상 野田佳彦이 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2012년에 중한일 삼국 자유무역구역의 설립에 관하여 논의 하였고 <중한일 투자 협정>을 맺었다. 이 계약의 체결은 3국간의 무역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것을 표시한다. 또한 이날은 중한 수교 20주년 기념일하고 103일의 차이를 두었다.

20년간 중국과 한국의 무역관계는 1992년 수교시기의 <우호 합작의 관계>의 단계로 부터 1998년의 <합작 파트너 관계>, 2003년의 <전면 합작 파트너 관계>, 2008년 한국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중한 양국의 관계를 <전략적 제휴 관계>로 확립하였다. 이로 하여 중한 무역액은 2015년에 3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근년에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 최대 수출입 시장,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과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되었고 한국은 중국의 제3대 무역 파트너, 제2대 수입국, 제4대 수출국으로 되었다. 중한 무역 관계의 고속발전과 동시에 이력저력한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대 한국의 무역적자문제 이로 인한 중한 무역 분쟁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 위치가 가깝고 문화전통도 비슷한데 역사상에서는 이미 밀접한 무역, 문화적 왕래가 있었다. 그러나 냉전시기, 두 나라는 단절상태에 처해 있었는데 이런 관계는 40여년을 계속 되었다. 비록 1972년 한국이 무역법을 수정했지만 중국의 국내시장봉쇄는 하나의 큰 격차로 한·중 무역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양국의 경제 내왕은 한국이 "6.23선언 (1973년)" 에서 사회주의국가에 대해 개방한 이후로부터 시작 되었다. 그때 당시 양국사이의 무역규모는 아주 작았고 또 대부분 중국 홍콩, 일본, 싱가포르 등 나라를 거치는 간접무역방식을 취하였다.

9) 成鉞(2013), 「韓國 과 中國間 商事紛爭 解決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 중한무역의 발전단계

1978년 덩소핑(邓小平) 이 제기한 "개혁개방"은 중요한 전환점이다. 덩소핑은(邓小平) "현재의 세계는 개방된 세계이다" "개방시키지 않으면 경제를 발전시키기 어렵다" "어떤 국가든지 발전하여 고립하려면 쇠국 정책을 실시하여서는 안 된다. 국제내왕을 가장하지 않고 발달한 국가들의 선진적인 경험, 선진적인 과학기술과 자본금을 들여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불가능한 것이다" "중국이 발전을 모색하고 가난하고 낙후한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반드시 개방해야 한다" "또한 네 가지 현대화를 실현하려면 학습을 잘 해야 하고 국제의 도움도 대량으로 받아야 하며 국제상의 선진기술, 선진설비들을 끌어들이 우리가 발전하는 기점으로 하여야 한다."¹⁰⁾ 라고 지적하였다. 덩소핑(邓小平) 이론을 토대로 중국은 홍콩, 일본 등 제3국을 통한 간접적인 민간무역을 시작하였다. 양국의 민간무역은 0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무역협력발전은 아주 활발하였는데 대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쳤다.

가. 1979—1984년 한중 무역의 맹아단계

이 단계에서 중국은 처음으로 개혁개방을 실시하는 실험단계이다. 역사와 정치적 원인으로 두 나라 무역의 상호 의존도는 비교적 낮는데 양국 모두 홍콩지역을 통하는 중계무역 즉 간접무역의 방식을 취하였다. 1979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근근이 1900만 달러에 지나지 않았지만 1980년에는 1.8억 달러, 더 나아가서 1984년에는 4.4억 달러까지 증가 되었고 1979—1984년까지의 년 증가율은 27.3%에 달한다. 그러나 수출 기준량이 적은 탓으로 비록 수출의 증가는 빨랐지만 1984년 말,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각자 수출입 무역총액의 1%도 채 되지 않았다¹¹⁾

나. 1985—1991년 한중 무역의 초급단계

이 단계에서 한중 양국은 비록 간접무역을 위주로 하였지만 중국에서 개혁개방을 심화시킴에 따라 1987년 한국과 "북방정책"을 추진시켰는데 이는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10) 덩샤오핑(1993), 「덩샤오핑문선 제3권」, 중국국민출판사.

11) 감소청·왕해란(2001), 「중·한 무역관계의 회고와 전망」, 대외무역출판사

관계를 유지시키는 동시에 동부 유럽과 사회주의국가들과 광범한 외교관계도 건립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조건을 마련하였다.

또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직접무역은 초보적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점차 간접무역을 대체하였고 무역의 규모도 재빨리 확대 되었으며 양국의 무역액도 대폭 증가하였다. 1985년 양국의 무역액은 이미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1989년에는 31.5억 달러에까지 이르렀는데 1985년부터 1989년 사이 한중 양국의 무역액 연 증가율은 63.3%에 달하였다. 그 직접무역의 비중은 1985년 전의 1% 미만으로부터 1989년 말의 39.2%에까지 증가하였다.¹²⁾ 1990년 한·중관계의 부단한 개선으로 양국의 민간무역 내왕은 날로 빈번해졌다. 특히 1990년 10월, 한중 양국이 서울과 북경에 각각 사무소를 설립한 것은 양국의 무역증가를 더 추진시켰다. 1991년 한중 양국의 무역액은 57.7억 달러로서 전년도에 비해 50.9%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직접무역의 빠른 발전으로 그것은 이미 한중 무역에서 60%의 비중을 차지하였다.¹³⁾

<표 2-3> 1980-1991년 한·중 무역 발전추세 단위: 억 달러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수출	1.2	2.1	0.5	0.5	2.3	6.8	7.2	8.1	1.7	14.4	15.5	23.7
수입	0.7	1.1	0.8	0.8	2.3	6.1	6.8	6.8	13.9	17.1	22.7	34

자료: 한국무역협회 KOTIS.

다. 1992-2001년 한중 무역의 발전개혁단계

1992년8월24일, 한중 양국이 정식 수교이후 양국은 <한중 정부 간 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이중납세 피면과 탈세 방지협정> 등 과 같은 협정들을 맺었다. 이때부터 원래 중국 홍콩 등 지역을 통한 간접 무역 들이 직접무역으로 전환되었고 양국이 상대

12) 장수흠(2004), 「중·한 무역문제탐색, 현대관리출판사」.

13) 김 진(2008),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방의 수출품의 관세도 일반 관세로부터 특혜 관세로 전변 되어 양국무역은 빠른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

1992~1993년 2년간 중한 수출입 총액은 50.6억 달러가 82.2억 달러에 달았고 그 성장률은 각각 56.0%와 62.4%였다. 이로부터 중국의 대외 무역정책의 개혁, 중국 환율의 세계화, 새로운 수출품 관세반납 제도의 실시 등 과 같은 개혁에 따라 중한 양국의 수출입액은 1994년과 1995년에 42.6%와 44.9%의 초고속 성장속도를 유지하였고 1994년의 중한 무역액은 100억 달러를 돌파 하였다. 양국의 무역은 2년간 매년 약 20%의 성장률을 거쳐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다가왔다. 금융위기의 거대한 충격에 의해 한국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이로 인해 수출입 수요고 극강되어 1998년에 중한 무역은 처음으로 부 성장을 맞이했다. 그 하강 폭도는 11.6%에 달한다. 그 이후부터 양국 무역은 회복단계에 들어섰는데 3년을 거쳐 2001년에 중한 무역액은 35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수자는 중국의 수출입 총액의 7%에 달하였고 한국의 수출입 총액의 10.8%를 점하고 있었다. 중한 무역 발전의 첫 번째 10년 단계에 이르러 동아시아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지만 여전히 21.6%의 연간 성장률을 유지하여왔다.¹⁴⁾

이 단계에 들어선 중한 양국의 수출입 상품구조는 분명한 변화를 가지고 있다. 예전의 보완적 산업 간의 무역(互补型产业间贸易) 으로부터 수직형태 산업내의 무역(垂直型产业内贸易) 으로서 전변 되었다. 한국의 주요한 수출상품은 전자, 전기, 화학공업, 철강, 등 공업 완성품이었는데 그중 철강과 금속제품의 수출비중은 1993년의 21.8%로부터 2000년의 9.4%로 하강 하였다. 전자, 전기 류 상품의 수출 비중은 1993년의 9.1%로부터 2000년의 22.9%로 상승 하였다. 그 외에 기계와 자동차 등 제품의 수출비중도 대폭적으로 하강하였다. 이와 반면 최초로 농 수 산물, 방직제품, 광산품 등 초급상품과 노동력 집약형 상품은 중국 대 한국 수출품의 80% 이상 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 되었다. 농 수 산물의 수출 비중은 1993년의 31.1%로부터 2000년의 16.1%로 하락하였고, 전자 전기 류 제품은 1993년의 6.5%로부터 2000년의 29.6%로 상승하여 농수산물을 대체하여 중국대 한국 수출품목의 1위로 되었다.¹⁵⁾

이 단계에 들어선 한중 양국의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한국은 20여 년간의 노력을 거쳐 <한강의 기적>을 창조하여 신흥 공업화 국가로 되었고 아시아의 “사소룡”(亚洲四小龙) 으로서 되었다. 중국도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률을 유지하였지만 양국의 정치 외교방면의 폐쇄에 인해 양국 무역도 장기간의

14) 중국 경제 통계 홈페이지 자료

15) 李圭泽(2003), 「中韩贸易问题研究 [J] 」, 亚太经济,

폐쇄된 상태였다. 1992년 중한 수교이후 장기간 폐쇄된 두 나라의 무역은 급속적인 성장을 가져왔고 양국의 경제발전을 대폭적으로 추진하여 그다음의 양국 무역의 고속적인 발전단계로 이어간다.

<표 2-4> 1992-1999년 한·중 무역발전추이(USD1억)

연도	한중 무역총액	중국 수입액	중국 수출액	한중 무역역조
1992	50.2	24	26.2	-2.2
1993	82.2	28.6	53.6	-26
1994	117.2	44	73.2	-29.2
1995	169.8	66.9	102.9	-36
1996	200.9	75.1	124.8	-49.7
1997	240.5	91.2	149.3	-58.1
1998	212.5	62.7	149.9	-87.2
1999	250.4	78.1	172.3	-94.2

자료: 중국 해관 통계

<표 2-5> 2000년 이후 한·중무역의 발전변화

단위 : 억 달러

연도	수출입 총액	증가율	중국 수출액	증가율	중국 수입액	증가율	중한 무역역조
2000	345	37.8	112.9	44.6	232.1	34.7	-119.2
2001	359.1	4.1	125.2	10.9	233.9	0.8	-108.7
2002	440.7	22.8	155	23.8	285.7	22.2	-130.7
2003	632.3	43.5	201	29.4	431.3	51	-230.3
2004	900.7	42.5	278.2	38.4	622.5	44.3	-344.3

자료: 중국 해관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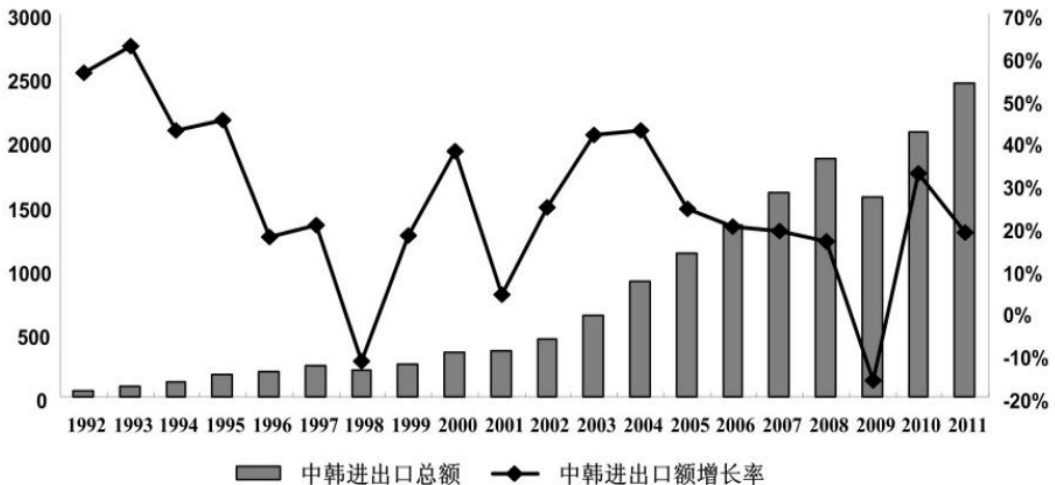
라. 2002년-2012년 한중 무역의 고속발전단계

2001년 11월 10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O제4기 부장급 회의에서 중국이 WTO에 가입하는 것을 심사 통과하였다. 이는 WTO제 143개의 성원국으로 된 중국의 대외 개방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섬을 표시한다. 중국의 WTO가입은 한국의 경제 발전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관세의 감소, 비관세 장벽의 감소 등의

변화에 따라 한국 대 중국 무역의 장애가 없어지고 더욱 중요한 방면은 중국과 한국의 무역은 양국 간의 교역에서 벗어나 세계무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되었다.

2002년 한중무역 수출입 총액은 24.4% 증가하였고 2003, 2004년 이년간의 증가율은 41.6% 와 44.2% 이다. 2003년 한국 대 중국의 수출은 2001년에 대 일본 수출의 능가를 이어 또 미국을 초과하여 중국이 한국의 제일 큰 수출국으로 되었다. 동시에 한중무역 총액은 한일무역 총액을 초과하여 중국은 한국의 제2대 무역국으로 되었다. 2004년 한중무역총액은 한미무역 총액을 초월하여 중국은 한국의 최대무역국으로 되었다. 2005년에 중한 무역 총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연속 4년간 년 증가율을 20%로 유지하였다. 2009년 미국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아 1998년 동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두 번째로 마이너스 성장하여 16%하강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한 무역은 2010년에 2000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이는 예측한 2012년보다 2년 앞당겼다. 2011년 중한 무역액은 한국 무역 총액의 20.4%차지하고 중국 무역총액의 6.7%를 차지한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액은 약 대 미국, 일본, 유럽의 수출액의 합이다. 한국의 10대 수출품목 중 6개의 최대수출국은 중국이다. 2002년~2011년은 중한 수교 이래 두 번째 10년 단계이다. 수출입 총액은 연간 평균 18.6%의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그림 1] 중한 수출입총액의 증가율(1992년~2011년)



자료: 中经网统计数据库.

2002년 한국 대 중국의 주요 수출품 품목은 전자, 전기, 석유 화학, 철강 등이 위주

이고 한국이 중국에서의 주요한 수입품목은 공업전자제품, 광물연료, 섬유제품과 농산물이다. 2006년, 한국 대 중국의 수출품목 중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전자부속품(16%), 공업전자제품(15.9%), 석유 화학 제품(15.7%), 공업기계(7.6%), 철강제품(6.9%) 이고 수입품은 공업전자제품(16.1%), 철강제품(12.4%), 전자부속품(10.6%), 섬유제품(6.8%), 광물연료(6.0%), 농산물(4.9%)이다.¹⁶⁾

그 이후부터 양국 무역은 평온한 무역상품구조를 유지하였고 산업 내 무역의 특징이 나타났고 그중에는 전자제품 및 부속품이 빠른 증가속도를 유지하였다. 2010년, 한국 대 중국의 수출상품은 각각 전자부속품(35.1%), 석유 화학제품(14.6%), 공업전자제품(8.1%), 자동차(6.1%)과 광물연료(5.9%) 이다. 한국 대 중국의 수입상품의 비례는 각각 전자부속품(18.8%), 공업전자제품(14.4%), 철강제품(13%), 방직물품(5%), 정밀 화학제품(4.6%)이다.¹⁷⁾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풍부한 노동력시장과 우량한 기초시설의 조건으로 세계 각국의 많은 투자를 이끌었다. 많은 국제기업들은 상품의 가공공장을 모두 중국에 설립하였다. 그중 한국은 지리적인 우세로 인해 더 많은 혜택을 받았다. 2001년 한국 대 중국 직접투자액은 6.47억 달러였고 2002년에는 10억 달러를 초월하여 10.79억에 이르렀다. 2004년에 20억 달러 돌파하고 2006년에 30억 달러, 2007년에 52.68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 후 몇 년간 년 평균 투자액은 35억 달러 이다.

3. 한중 무역구조의 특성

한·중 두 나라 사이의 산업 내 무역증가는 매우 빠르게 나타났다. 산업 내 무역이란 두 나라의 쌍무무역을 말하는데 동시에 비슷한 제품을 수출하고 수입하며 양국 제품의 대체성이 매우 높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무역추세는 보통 두 가지 기술, 자원과 경제발전 수준이 아주 비슷한 경제체제 중에서만 발생한다. 중국과 한국의 산업 내 무역의 증가는 양국이 제3국에 대한 수출정황에도 비슷한 증가를 보인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수출의 유사계수가 높을수록 두 나라가 수출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의 몇 년 동안

16) 张宝仁·曹洪举(2008), 「近期中韩经贸合作现状与前景分析」.

17) 한국 국제무역 협회 (www.Kita.org)

중국과 한국의 수출 유사성은 점점 커졌는데 이는 두 나라의 주요 수출 제품구조가 비슷해지고 중국이 기술방면에서 빠른 발전을 가져오고 있음을 반영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 사이에 중국과 한국은 선박, 방직제품, 전자제품의 수출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였고 또 한·중 두 나라의 전지전기, 기계, 자동차와 합성플라스틱 등 방면의 경쟁도 부단히 치열해지고 있으나 강철제품, 화학공업제품, 합성방직물과 방직 섬유 등 방면의 경쟁은 점차 약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주요 수출이 중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 한다.¹⁸⁾

제2절 한 중 무역의 특징

1. 양국 간 무역 구조변화

양국 간 교역은 1998년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상호보완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 간 한국의 대중 수출의 주종은 공산품, 수입의 주종은 1차 산품으로 구성되어 산업간 비교우위에 따른 부업형태를 이루어 왔다. 최근 한국은 건설 및 수출수요가 큰 산업용 원자재를 수출하고 중국은 가격경쟁력이 있는 섬유, 전자제품과 부품, 기타 경공업 제품의 수출을 늘려가고 있다. 양국 간의 무역구조는 수평적 분업 형태가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다.

2. 한중 무역상품별 구조변화

지난 10년간 한중 무역 상품별 구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대중수출의 비중은 철강금속, 화공품, 섬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전기전자, 화공품, 철강 및 금속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또한 대중수입품목도 중국의 경제가 변화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다. 1992년 수교당시 농수산물이 1위, 섬유, 광산물이 뒤를 이었으나 올 상반기는 전기 전자가 1위에 올랐으며 섬유, 농수산물, 화공품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대중교역 상품구조상의 특징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원 부자재가

18) 왕소근(2003), 「중·한 무역발전의 주요 장애와 협력경로」, 세계경제연구출사. PP.57-59.

많고 중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것은 최종 소비재가 많다는 것이다. 즉 한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 및 중국 현지기업에 원 부자재를 수출하고 이를 중국에서 가공해 제품을 만들어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 수출하는 패턴이다.

3. 한중교역의 신속한 성장속도

한중 양국의 교역은 수교 이후 10여 년간 다른 지역과의 교역에 비해 빠른 성장추세를 보였다. 1992년 63억 8,000만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간 무역은 년 평균 19.4%의 증가속도를 나타내면서 2001년에는 314억 9,000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리고 한국의 대중수출은 년 평균 23.9%의 성장세를 이루어, 대중수입의 연 평균 증가율(15.2%)을 크게 앞질렀다.

외환위기의 영향을 받았던 1998년과 미국경제의 붕괴로 총수출 자체가 급감했던 2001년을 제외하면 대중 수출과 수입이 모두 40%대 성장률의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다. 1992년에 중국은 한국의 교역상대국 제5위였으나 2001년에는 일본, 대만, 미국에 이어 4대 무역대상국으로 지위가 격상하였다. 이렇게 중국과의 무역이 신속하게 성장한 주요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제호황과 한국의 경제안정이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8%를 상회하였으며, 한국은 IMF사태 이후에 안정을 찾아가면서 시장 기반이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둘째, 한중 양국의 환율의 안정화가 양국 수출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셋째, 2000년의 국제상품가격의 상승은 양국 무역의 성장을 추진하는 작용을 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중국기업 투자의 증가는 중국 상품 수출을 이끌고 있다.

4. 한중 교역 불균형에 따른 통상마찰

1997년에 중국의 반덤핑 제소를 시작한 이후 2002년 5월말까지 총 18건의 반덤핑 제소를 발동했는데 이 가운데 한국기업이 포함된 것이 14건에 달하는 등 중국의 반덤핑 제소가 유달리 한국에 집중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대중수출품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한 석유화학, 철강 등의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¹⁹⁾

19) 한국무역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2010)

제3장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제1절 한중 무역의 문제점

1. 중국대 한국 무역적자의 확대 및 양국 무역형태의 불균형

중국 통계를 기준으로 하면 중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1994년 2억 9,000만 달러에서 2009년 489억 달러로 급증했으며 2010년 1~9월에는 522억 달러로 2009년 총규모를 초과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체결된다면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대 한국 무역 적자는 대부분 자동차, 기계, 철강, 화학공업 등 중국의 경쟁력이 약한 분야에서 나타난다.²⁰⁾ 2000년부터 중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의 추이는 아래의[그림 2]에서와 같다.

위 표를 보면 한중 무역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의 무역거래는 크게 증가 되었지만 무역수지의 불균형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중국 상무부 관계자는 한중 간 무역수지 불균형에 대한 원인은 한국 기업의 생산과 가공을 중국으로 이전하고 한국은 중국에 고 부가가치의 첨단기술제품을 수출하는 반면 중국은 한국으로 농산물, 방직품 등 저가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점에서 양국 간 무역수지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림 2]중국 대 한국 무역적자 추이



자료: 중국 해관(海関), WWW.CUSTOMS.GOV.CN

20) 박번순, 전계논문, P85

한국이 무역흑자로 전변된 배경에는 중국의 경제개발과 대외수출에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와 자본재를 한국 기업이 공급하는 구조에 근본적으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중간의 기술 격차가 유지되는 한 이와 같은 무역흑자 현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²¹⁾

2. 한중 무역경쟁의 심화

중국의 수출무역은 처음의 단일형태로부터 복합 형태로 과도 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한국과의 무역호조의 형식부터 점차 무역경쟁으로 전변 되고 있다.

첫째, 중국기업의 상품이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한중 무역에서 중국의 우세는 노동력이 저렴하여 한국 상품과의 대비에서 가격 우세를 가지고 있어 점차적으로 한국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와 동시 중국의 대외경제의 개혁에 따라 중국은 많은 외환투자와 국제기업들의 입주하여 더 많은 국제적인 경쟁우세를 가지고 있다.

둘째, 한중무역의 수출구조가 비슷해짐에 따라 시장점유가 중복되고 있다. 양국의 수출 상품이 점차 비슷해지면서 2004년에 양국의 수출품목의 상사도가 50%이상으로 증가 되었다.

3. 높은 원부자재 비중

한국의 대 중국 수출 증가율 하락은 중국 수입시장 축소, 원화 평가 절상으로 인한 수출 가격경쟁력 하락, 중국 현지기업의 기술력 향상에 따른 중국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격화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대 중국 수출품의 약 80%가 한국 투자진출 기업 및 여타 외국인 투자 기업체와 중국 기업에 중간재로 공급되는 원부자재이다. 최근의 중국의 중간재 제품이 점차 가격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을 보유함에 따라 원부자재의 수입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의 부품조달과 현지 환율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진출 초기에 한국산 원부자재를 수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원

21) 中国发展出版社(2009), 「韩国的经济发展」

부자재 조달을 현지화 하고 있어 최근 부품 및 소재를 중심으로 대 중국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2006년 한국에서 발표한 재중 투자기업 Grand Survey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지 원부자재 조달선은 중국(52.7%), 한국(37.8%), 제3국(9.5%)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으로부터의 원부자재 조달비중은 2005년의 44.8%에서 2006년의 37.8%로 하락하였고, 향후 원부자재 조달 계획은 역시 현 상황을 유지(46.8%)하거나 중국 위주로 변경(51.2%)하겠다는 응답이 높아 앞으로도 부품 및 소재의 대중 수출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²²⁾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대 중국 투자증가는 초기 단계에서 원부자재 수출 증가를 초래할거고 점차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고 중국의 생산업체의 경쟁력 상승과 함께 중국에 진출한 외국 투자 업체가 원가 절감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를 목적으로 원부자재를 중국 내에서 현지 생산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한국산 수입 원부자재 사용이 감소하고 있다.

4.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최근 몇 년에 원화 강세는 대중 수출 증가율 둔화의 한 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대중 무역흑자가 감소된 2006년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7.4% 평가 절상 되었으나, 일본 엔화와 대만 달러의 경우 각각 20.6%와 2.4% 평가 절하 되었다. 또한 원화 환율은 2001년 이후 미국 달러, 중국 위안화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절상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 위안화에 대한 한국 원화는 2001년 155.8원에서 2006년의 119.3원으로 평가절상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시장에서 원나라 기업들의 수출 가격 경쟁력은 주요 경쟁 대상국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6년 중국의 대 일본 및 대 대만의 수입증가율은 전년에 대비하여 각각 8.6%와 1.4%증가 하였으나 ,대 한국 수입 증가율은 전년에 비해 6.9% 둔화 되었다.

이러한 원화의 상대적 강세는 부품 및 소재의 대 중국 수입 성장율이 대 중국 수출 성장율을 크게 상회하는 원인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다.²³⁾

22) KIEP(2007), 「2006년 대중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3) KLEP 상계논문

5. 저렴한 중국 농산물

현재 중국산 농산물은 한국의 대부분 농산물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산 농산물은 서민층에서 인기를 끌면서 빠르게 흡수되었다. 재래시장에서도 흔히 중국산 농산물을 찾아볼 수 있고 대수롭지 않게 소비자들은 중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고 있다. 중국의 농산물은 노동 집약형 농산물인 채소, 과일 등의 수입이 매년 지속적인 증가추세이며 그 이유는 품질이 높아지고 있고, 가격경쟁력이 우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06년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23.1억 달러이고, 수입은 133.2억 달러로 농산물의 무역적자는 110.4억 달러 수준이다. 농산물 수출은 면류, 당류 등 가공 농산품 수출이 총 수출액의 76.7% 차지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입은 곡물류, 과일류, 양념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 수입이 총 수입액의 4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관세가 낮게 설정된 1차 가공농산물의 수입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한국의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산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²⁴⁾

중국 농수산물 수입 문제에 관해 한국 정부는 국내농산물의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WTO 규정을 연구하여 농업 정책을 마련하고, 외국 농산물 수입에 따른 소비자 이익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6. 중국 측의 높은 관세장벽

중국은 WTO가입 양허 안에 이행을 지속한다는 차원에서 2006년 11월 1일부터 58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인하 조정하는데 이어 2007년 1월 1일부터 HS코드 8단위 기준 44개 세목의 최혜국 세율을 다시 인하했다. 농산물과 공업산물의 평균세율이 각각 15.2%와 8.95%에 달하고, 중국의 평균 수입관세율은 WTO가입 당시 15.3%에서 2007년의 9.8%로 5.5% 인하되었다.

상당한 품목의 수입관세율이 중국의 WTO가입 양허안 내용에 부합하고 있지만, 중국이 WTO양허 안에서 약속한 9.4%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현 중국의 관세 수준은

24) 김권형(2007), 「농수산물 유동공사'한중농산물 교역 확대 방안」, 농수산물 무역정보.

개발도상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선진국 수준(3.9%)에 비해 크게 높기 때문에 2010년까지 수입관세율 인하를 단계적으로 지속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국은 수입관세 이외에 13~17%의 부가가치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소비세(담배 30~45%, 주류 5~25%)도 부과한다. 특히 아직도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허가증 관리 제도를 시행하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병행하고 있다.

7. 한국의 높은 비관세 장벽

자국의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가 관세 장벽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많은 비관세 장벽도 설치하였다. 예를 들면 반덤핑, 기술 장벽 검사 검역조치 및 기타 비관세 장벽으로 중국산 제품의 한국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장벽들을 설치하고 있다.

기술적 무역 장벽은 중국의 대 한국 수출 상품에 대해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국의 기술적 무역장벽에 큰 영향을 받는 대 한국 수출 상품 품목은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식품 첨가제, 의약 원료 등으로 그중에서 신선한 과일, 돼지고기나 소고기 등 고기류 제품 및 약품에 대한 수입은 주로 검사, 검역 규제 및 안전 표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8. 중국의 생산력 증가

2001년 이후 중국 제조업내 외국인 직접투자가 한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통신설비, 일반기계, 전용설비, 광학부품 등 하이테크 제조업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능력이 확충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생산능력의 확대에 따라 대중수입이 확대되는 품목은 IT관련 제품이며, 대중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품목은 합성수지 이다.

또한 중국의 공급과잉으로 인한 잉여물량의 수출증가는 철강제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IT산업의 생산 확대로 2004년과 2005년 중국의 반도체생산 증가율은 각각 23.9%와 344.7%, 휴대폰 생산 증가율은 각각 30.0%와 58.2%를 기록한바 있

다. 이러한 중국의 IT산업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따라 관련 중국산 제품의 대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²⁵⁾

한편 중국의 중복 과잉 투자로 인해 공급과잉이 발생함에 따라 잉여 물량의 대 한국 수출이 확대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품목은 철강제품으로, 중국의 철강 산업은 2000년대 들어서서부터 폭발적인 설비 능력 증가로 2005년부터는 공급과잉으로 전환되어 철강수입은 급감하는 반면, 수출은 폭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철강제품은 중국의 공급과잉 심화에 따른 잉여 물량 수출을 크게 늘린 결과 한국의 한국이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의 위치(중국 철강 수출중 21%점유)를 점하는 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중국 내 수입 급감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9. 양국 간 분업 구조 진전으로 인한 역수입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확대로 양국 간 분업구조 진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프린터, 디지털 카메라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조립 등 일부 공정의 중국이전으로 한국에서는 부품을 공급하고 완제품을 역수입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 공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에 집중하고 저부가가치 제품은 중국 법인 또는 현지 기업으로부터 수입하는 형태이다. 평판 디스플레이의 경우 한국에서는 TV용 대형 제품을 위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 모니터와 소형 TV용 제품을 수입한다.

또한 일부 품목은 중국 진출기업의 현지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역수입이 증가되고 있다. 매출액(제조업 기준) 중 한국의 수출비중은 2004년도41.9%에서 2006년도 17.2%로 증가되었고, 매입 액(제조업 기준) 중 한국 수입비중은 2004년에 51.3%에서 2006년의 42.4%로 증가한바 있다. 이처럼 중국 현지 법인의 한국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 비중은 중국 현지 구매의 증가로 감소하고 있다. 수송기계의 경우에는 현대, 기아 자동차의 중국 진출로 수출이 급증했으나 2006년부터 수출은 둔화되고 수입은 증가하고 있다.²⁶⁾

자동차 부품과 컴퓨터 부품의 경우 주로 재중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수출하고 있어 중국 내수와 관계없이 진출기업의 생산량도 감소로 대중 수출이 부진 할수 있다. 예컨

25) 人民出版社(2008), 「国别贸易投资报告2007」.

26) 삼성경제연구소(2008),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대,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은 심양 삼보 컴퓨터의 중단으로, 그리고 자동차 부품은 국내기업의 CKD (Complete Knockdown: 완성품조립에 필요한 모든 부품을 수출하는 것)수출 포기과 중국 진출 완성차 업체의 일괄생산 체제 가동에 관련 부품의 대중 수출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지 판매 어려움으로 인해 수송 기계제품, 컴퓨터 및 사무기기의 역수입이 확대되고 있다.

10. 한국 기업의 중국 직접투자 비중 증가

저임금 및 낮은 토지가격 등 생산 요소의 이유로 많은 한국기업은 중국에 해외 직접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정부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규제로 인해 중국에 진출한 일부 한국계 기업의 생산 위축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외국인 개인소득세 관리강화를 비롯한 환경규제 강화, 고용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중국의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²⁷⁾ 이런 중국정부의 움직임으로 한국기업의 피해는 심화되어 지금은 많은 한국기업들은 중국에서 나가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인도, 베트남 등 나라로 진출하고 있다.

11. 특정품목에 지나친 수출 의존도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출구조는 중국에 집중되어 있다. 석유화학제품의 한국의 수출액은 18억 8,300만 달러로 전 세계 수출량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양국간 무역 분쟁으로 중국이 한국으로부터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에 제한을 가한다면 한국의 석유화학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부품중 전구조명 부품은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고, 음향기기부품도 50%이상으로 중국의 비중이 매우 높다.²⁸⁾

27) 한국무역협회(2007), 「한국의 대중, 대일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동향분석실.

28) 한중무역의 현황과 문제점(2008)

제2절, 한중 무역 분쟁의 종류

대부분의 무역마찰이 선의(goodwill)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principle of sincerity and truthfulness)에 따라 상당한 정도의 주의(considerable care and attention)를 기울이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무역 분쟁(avoidable claim)이다. 실제로 무역 분쟁은 주의 부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첫째, 거래처의 선정과 신용조사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면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둘째, 상담과 계약절차에 있어서 주의의 결여는 무역 분쟁의 원인이 된다. 셋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도 주의를 다하지 못하면 무역 분쟁이 발생한다.

한편, 피할 수 없는 무역 분쟁(unavoidable claim)은 당사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방지할 수 없는 무역 분쟁으로 앞의 Market Claim이나 계획적 무역 분쟁이 여기에 속하지만 이것 역시 거래 전에 거래처를 선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이므로 피할 수 있다.²⁹⁾

<표 3-1> : 무역 분쟁 및 클레임의 종류

무역 분쟁 및 클레임의 종류	분쟁 및 클레임의 내용
품질	품질불량(Inferior Quality) 품질상이(Different Quality) 규격상이(Different Specification) 변질 및 변색 (Deterioration or Discoloration) 등급지하(Inferior Grade) 손상(Damage)
수량	수량부족(Shortage) 중량부족(Under Weight) 감량(Diminution)
대금결제	초과지급(Over Payment) 대금미지급(Non-Payment) 어음할인 거부 (Reluctance to Negotiate Draft)
운송	선적지연(Delayed Shipment) 선적불이행(Non-Shipment) 환적(Transshipment) 하역 불량(Bad Handing),

29) 양영환 · 오원섭(1997), 「무역상무론」, 법문사. p.639-641.

	분실(Missing) 유실(Drifting Away), 도난(Pilferage)
포장	불완전포장(Insufficient Packing) 포장불량(Inferior Packing) 부정포장(Fails Packing)
보험	송장과오(Error in Invoice) 서류불비(Lack of Documents) 기재사항상이(Misdescription)
기타	신용장발행지연(Delaying L/C) 계약취소(Cancellation of Contract) 계약불이행(Breach of Contract)

자료: 김경배(2005),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제3절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한국과 중국 간의 유구한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장기간의 우호근린 이어왔고, 문화적인 배경 또한 우호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양국 간의 무역의 발전이 여타의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이어가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 수교 후, 양국의 무역은 간접적인 교류관계에서 직접적인 교류관계로 변화되면서 무역량이 해마다 신속하게 증가되어 왔다. 한중 양국의 무역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무역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한국의 무역 분쟁의 현황과 중국의 무역 분쟁의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의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통계자료와 기획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설명하고 중국의 경우에는 전국 중재위원회 총회자료를 비롯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등의 중재기관 내부통계자료를 인용하여 양국의 무역 분쟁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1. 한국의 무역 분쟁의 현황

대한상사중재원의 2010년 무역 분쟁 접수현황에 따르면 2009년 무역 분쟁 발생건수는 총 982건이었고 총금액은 739.4백만 달러였다. 그 가운데 국제무역 분쟁이 발생건수는 288건이고 금액은 151.2백만 이었다. 2010년의 무역 분쟁의 발생건수는 1,117건으로 전년도 보다 125건 13.75%가 증가되었는데 국제무역 분쟁의 건수는 217건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24.65%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무역 분쟁의 총금액은 549백만 달러이고 국제무역 분쟁의 금액은 82.4백만 달러로 2009년보다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 대한상사중재원 무역 분쟁 접수 현황(2010년)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0년		2009년		증감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국내	900	466.7	694	588.2	29.68	-20.66
	국제	217	82.4	288	151.2	-24.6	-45.53
	소계	1,117	549	982	739.4	13.75	-25.74
중재	국내	264	462	240	575.6	10	-19.73
	국제	52	72.8	78	78.2	-33.3	-6.89
	소계	316	534.9	318	653.8	-0.63	-18.19
알선	국내	636	4.6	454	12.6	40.09	-63.08
	국제	465	9.5	210	73	-21.4	-86.97
	소계	801	14.2	664	85.6	20.63	-83.45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자료 참조(<http://www.kcab.or.kr>)

<표 3-3> 대한상사중재원 무역 분쟁 접수 현황(2011년)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2011년		2010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계	국내	1,012	248,253,568	900	466,697,381	12.44	-46.81
	국제	226	146,975,675	217	82,338,675	4.15	78.5
	계	1,238	395,229,243	1,117	549,036,056	10.83	-28.01
중재	국내	246	242,794,921	264	462,043,282	-6.82	-47.45
	국제	77	140,052,481	52	72,828,333	48.08	92.3
	소계	323	382,847,402	316	534,871,615	2.22	-28.42
알선	국내	766	5,458,647	636	4,654,099	20.44	17.29
	국제	149	6,923,194	165	9,510,342	-9.7	-27.2
	소계	915	12,381,841	801	14,164,441	14.23	-12.59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자료 참조(<http://www.kcab.or.kr>)

한편, 제기된 국제무역 분쟁은 중국, 미국, 일본과의 거래에 집중되어 있고, 그 외 국가는 3% 미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무역량이 큰 국가일수록 무역 분쟁의 발생빈도가 높게 나타나 무역량의 증가는 무역 분쟁의 증가와 정비례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국으로 대두됨에 따라 무역 분쟁의 발생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표 3-4> 무역 분쟁 다발국가별 현황(2009년)

국가별	클레임 건수	백분비
총수	695	100
중국	180	25.9
미국	157	22.6
일본	141	20.3
독일	19	2.7
대만	16	2.3
홍콩	15	2.2
프랑스	14	2
영국	12	1.7
베트남	10	1.4
태국	9	1.3

자료: 대한상사중재원,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p.20 (<http://www.kcab.or.kr>)

2. 중국의 무역 분쟁 현황

2011년 중국 전국의 215개 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88,473건이었고, 2010년의 9,550건에 대비하여 12.1%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역 분쟁 총금액은 1,133억 위안으로 2010년 대비 21.6%인 201억 위안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건수가 증가된 중재위원회는 전체 중 63%에 해당되는 136개 중재위원회였다.

<표 3-4>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접수현황(2008-2011년) (단위: 건, 억 위안)

연도	건수	금액
2008	1230	209.2
2009	1482	173.1
2010	1352	137.5
2011	1435	156.8

자료: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자료 정리(www.cietac.org)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무역 분쟁 사건접수현황을 보면 2008년 접수된 무역 분쟁 사건은 모두 1,230건으로, 무역 분쟁 총금액은 209.18억 위안으로 2007년을 대비하여 83.1%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의 경우에는 무역 분쟁 접수사건이 모두 1,482건이고 2008년보다 252건 증가하고 증가율이 20.5%이었고, 무역 분쟁 총금액은 173.1억 위안으로 추정되고 2008년 대비하여 17.2%인 32.2억 위안이 감소되었다. 2010년에는 접수한 무역 분쟁 사건은 모두 1,352건이고 2009년보다 131건이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역 분쟁 총금액은 137억 위안으로 2009년보다 20.6%인 35.65억 위안이 감소되었다.

2011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 접수된 무역 분쟁 사건은 1,435건으로 전체 무역 분쟁 접수사건 중에 국제 사건이 470건 이었고 국내사건은 956건 이었다. 2010년 대비 접수사건을 비교하여 보면 83건이 늘어나 6.1%가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1년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접수된 사건의 총금액은 156.8억 위안으로 2010년 보다 14% 19.3억 위안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8년 접수된 국제무역 분쟁 사건은 548건이었으며, 2009년은 559건이고 금액 100.5억 위안이었고, 2010년 접수된 무역 분쟁 사건은 418건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2011년 중국국제경제무역위원회가 접수한 국제무역 분쟁 사건은 470건이고, 사건당사자 국가는 55개국으로 조사되었다.

3. 한중 무역 분쟁의 현황

한중이 수교한 이후 양국의 교역량은 급격히 증가해 오고 있다. 한중 교역 초기에는 단순히 농산물 주요 교역대상으로 하였으나 지금은 중화학공업, 기계, 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등 기술 집약형 제품을 중심으로 양국의 무역거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친환경제품과 저탄소배출제품(환경오염방지)의 소비자 선호와 국가정책에 부흥하기 위한 제품군의 영역도 확대되고 있다.³⁰⁾

대한상사중재원에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접수된 중재와 알선의 총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건수는 총 269건, 분쟁금액은 밀화 95,911,664 달러에 이르렀다. 중재는 86건에 신청금액은 미화 78,411,713달러를 기록했다. 계약종류별로 보면 매매계약 관련 중재사건이 53건으로 62%를 차지했고 기술과 지적재산권 분야가 4건, 건설계약이 2건을 나타냈다. 금액규모면에서는 미화 10,000달러 이상 미화 500,000달러 미만 사건이 25건을 차지했다. 분쟁품목은 일차산품 25건, 전자전기 13건, 플라스틱과 화학제품 10건, 생활용품 관련 중재사건이 7건이었다. 원인별로 보면 품질불량 25건, 지적재산권 13건, 대금결제 10건, 계약조건 해석사건 9건, 선적지연 및 불이행 관련 중재가 7건이었다. 처리기간은 6개월 이내 종결된 사건이 38건, 1년 이내가 31건이었다. 중재

30) 두흔흔(2010), 「한·중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처리내용을 보면 56건이 일반판정, 화해판정이 6건, 중재신청 후 비용예납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불이행하는 경우도 22건이나 되었다.

알선은 183건에 분쟁제기금액은 17,499,951달러를 나타냈다. 매매계약 관련 알선사건이 149건으로 81%를 나타냈고 분쟁제기 금액규모는 미화 10,000달러 이상 미화 100,000달러 미만의 알선사건이 99건으로 22.4%를 나타냈다. 품목별로 보면 방직 섬유류 33건 철강과 금속 27건, 일차산품과 플라스틱(화학)분제가 각 25건, 전자 및 전기 18건, 생활용품 14건을 나타냈다. 원인별로 보면 대금결제 65건, 품질불량 59건, 선적 불이행 및 지연이 34건을 차지했다. 처리기간은 3개월 이내가 114건, 6개월 이내 47건, 그리고 12개월 이내도 22건이나 되었다. 처리 내용은 합의해결이 54건, 수락거부 96건, 절차불이행 등이 26건이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기업과 중국소재 기업지간의 교역분쟁은 중재로 해결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에서의 중재통계에서도 중국 관련 사건이 증가추세에 있다. 향후에도 한중 양국기업이 중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분쟁해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예견된다.³¹⁾ 이를 위해 기업체의 대응책, 중재기관의 역할,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책으로 더 전면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제4장 한중 무역 분쟁의 사례분석

31) 김광수(2010), 「최근 중국 중재의 동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논문집, p.3, p.6.

제1절 품질에 관한 무역 분쟁

1. 품질불량을 구실로 한 대금지불 거부한 클레임 사례³²⁾

(1)사건개요

중국의 여러 방직업체들은 향후 몇 년간의 시장 호황을 예측하여 노후설비 개체를 위해 새로운 방직 기계수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수십 개의 방직업체가 6개의 국영 수입대행업체를 통해 국내 3개 기업과 D/A조건으로 2백2십만 달러 상당의 수입 상담을 추진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실적을 올리는데 혈안이 되어있던 한국 업체들은 기계 한 대라도 더 팔기 위해 앞 다투어 외상거래 건을 제시했다. 선적도 무사히 끝났고 대금지불만 기다리고 있던 차에 중국 업체들로부터 일제히 기계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대금지불을 할 수 없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다. 현지에 있는 지사들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했지만 상대가 대금지불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연락만 받았다. 호황을 점쳤던 방직업체가 동남아 사태로 시황이 나빠져 대금지불이 어렵게 되자 품질 불량을 트집 잡는 것 같다는 의견이었다.

(2)결과 및 분석

중국시장에서 후발 주자인 한국 업체들이 다른 국가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매우 불리한 결제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사례이다. 중국기업들도 미국, 일본, EU 국가 등 기업과는 대부분 L/C 방식 거래를 하면서도 한국과의 거래에서는 외상방식거래(D/A, D/P 등)를 선호하는 것도 후발주자라는 한국 업체의 단점을 이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한국 업체들이 L/C 조건만을 고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중국거래에 있어서는 가능한 Usance L/C를 최종적인 대안이라는 생각으로 상담에 임하여야 하며, 부득이 D/A 또는 D/P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신용과 평판 등에 대한 신용조사를

32)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내부자료, 「무역클레임」 교재 참조

실시함과 동시에 공신력이 있는 중국의 전문신용 평가, 공관, KOTRA, 수출보험공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신용점검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품질 상이 무역 분쟁 사례³³⁾

(1)사건개요

한국 H사의 경우 중국 Y사와 33만 달러 상당의 폴리에스트 분할 선적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1차 선적이 끝난 후 Y사에서는 1차 선적 분 수령 후 품질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선적서류 인수를 거부하고 17만 달러의 보상금까지 요구하였다. 이에 H사 본사에서는 상품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술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불량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 하였지만 중국 Y사에서는 계속하여 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2)결과 및 분석

사건의 진상을 추적해보니 중국의 L/C 개설은행을 네고(negotiation)된 선적서류를 접수하면 바이어에게 선적서류 도착통보와 동시에 대금결제 여부를 물어 만약 바이어가 대금결제 유보를 요청하면 대금지불 거부를 통보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L/C 개설은행으로부터 바이어가 선적서류일체를 인수하여 물품 통관한 후 L/C 대금지불거부를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³⁴⁾

한국의 은행들은 중국의 L/C 개설은행이 선적서류상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대금결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수입업체에게 네고 해준 대금을 상환 받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바이어들은 시황이 불리하게 변화하면 선적서류와 물품 인수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L/C 개설은행으로부터 선적서류 일체를 인수 받아 물품을 통관 처분한 후 대금지급을 거부한다.

33) Kotra, 「중국 무역클레임」, kotra 내부교육자료, p.53

34) 신용장 개설시 중국은행들은 수입업자로부터 신용장개설 금액의 30%정도의 예치금을 받아 놓고 있다가 신용장 만기에 수입업자가 전액을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장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수출업자가 사기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법원을 통하여 지급정지 명령을 받아놓고 합법적으로 신용장대금을 미지급하는 것이다.

3. 물품의 하자에 의한 무역 분쟁 사례³⁵⁾

(1)사건개요

신청인은 외국 업체로 부터 여러 가지 규격의 공업용 고무제품을 수입하여 자국 내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미국법인이고 피 신청인은 공업용 고무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한국법인이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1970년대 후반부터 고무제품인 O-Ring 40여종의 거래를 계속하여 오다 가격조건이 맞지 않아 거래가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거래중단 8년이 경과한 뒤에 신청인은 위 제품의 외관불량으로 거래처로부터 상당량이 반품되어 있다면서 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 신청인은 물품의 외관불량은 거래당시에 판별되는 문제로 거래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거래가 종료되고 8년이 경과한 뒤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여 중재를 신청하였다.

(2)결과 및 분석

신청인이 손해발생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인도된 계약물품의 하자는 제품에 칼자국 흠이 있다든가 아니면 떨어져야 할 조각이 그대로 붙어있는 것으로 이는 육안으로 쉽게 판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신청인은 하자 발견즉시 이를 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속한 문제의 물품을 반송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하자 물품중 한 가지 size에 대한 것만 통보하고 나머지 size의 하자는 발견한 즉시 이를 피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 신청인은 통보 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책임이 없다. 단지 피 신청인은 일정을 범위내의 하자발생을 용인하기로 신청인과 사전에 약정한바 없다면 그 하자에 대한 대체, 수리, 환불 등 최소한의 책임은 있으므로 통보 받은 물품에 대한 배상책임은 없다.

4. Undervalue한 물품 대금 차액의 미지급 분쟁 사례³⁶⁾

3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08호, pp.109~112

(1) 사건개요

건축 자재를 생산하는 F사는 조선족이 운영하는 O사로부터 거래 제의를 받았다. 중국에 있는 O사가 서울의 무역회사 앞으로 개설한 마스터 L/C를 근거로 Local L/C 거래를 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계약금액대로 하면 관세가 너무 높으므로 총 금액의 50%로 선적 서류를 맞추고 나머지 차액은 서울에서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겠다고 했다. 서울에 있는 지사에서 직접 현금을 준다니 별 의심 없이 첫 번째 거래를 진행했고 5천만원 상당의 거래는 무사히 끝났다. 문제는 두 번째 거래부터였다. O사와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로컬 L/C거래(현금은 중국에서 물품 수령 후 받기로 하고)를 진행했고 선적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그런데 O사는 50% 현금 지급 결제를 미루며 불량품이 실렸다고 하면서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F사로서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시인하고 향후 거래 관계를 고려 즉시 교체해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알렸다. 그러나 중국측에서는 신품을 전량 다시 송부하라는 것이다. 반송을 해 주어야 대체품을 송부해 줄 수 있다는 것을 거듭 알렸으나 막무가내다. 어쩔 수 없이 대체품을 보내 주었으나, 불량품의 반송도 안 해주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히려 손해를 보았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울의 Local L/C를 끊어준 회사도 부도나 호소할 곳도 없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O사의 조선족 사장은 현재 서울에 D사라는 회사를 설립해 놓고 중국에 본사를 가진 자회사라고 하며 비슷한 방식으로 국내업체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2) 결과 및 분석

이 사례에서 일단은 “undervalue”부터가 문제이다. 우선은 법을 어긴 상태에서 상대방이 하자를 걸 경우에는 방법이 없다.³⁶⁾ 물론, 수출업자의 입장에서는 오너에 대한 요구를 결코 뿌리치기가 쉬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금 결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 없이는 제품을 인도하지 않도록 바이어를 설득하여야 한다. 신용과 능력이 있는 바이어

36)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전계자료 참조

37) “undervalue”는 시세보다 싸게 평가한 상품의 가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요구하여 실제 거래된 상품의 가격 보다 낮은 송장가격의 명시를 요구하는 형태로 시장에서 사용되는 불공정 가격이다.

는 수출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다. 무역을 하는 바이어들의 대부분은 비즈니스의 베테랑들이기 때문에 공급자의 신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쪽의 여건 설명은 오히려 바이어에게 신뢰를 주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5. 물품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례³⁸⁾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영국 바이어 U사에 스웨터를 납품하기로 하고, 피 신청인과 한국산 원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견본품과 달리 값싼 중국산 원사를 공급한 사실, 신청인은 중국산 원사로 스웨터를 편직 하여 U사에게 수출한 사실, U사는 위 제품 인수 후 하자가 있다고 하여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한 사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본 분쟁에 관하여 중재에 의해 해결하되 사후 바이어로부터 클레임 등의 배상청구가 있을 경우 원사 품질문제로 생긴 부분은 피 신청인이 책임지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결과 및 분석

신청인은 위 스웨터 하자는 피 신청인이 공급한 원사의 품질문제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피 신청인은 위 스웨터의 하자는 신청인의 생산 관리상의 잘못으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 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한국산 원사가 아닌 중국산 원사를 공급하였고, 신청인이 중국산 원사로 편직, 수출한 스웨터는 중국산 원사가 꼬임 안정도가 불안정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도 원사를 세밀히 검사하지 않은 과실과 편직상 과다 꼬임으로 발생한 영클어짐, 코빠짐 등의 현상을 간과한 사실 등이 있는 바, 본 건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 신청인의 책임정도를 손해액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피 신청인은 상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 수령시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의 발견시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3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971110050 (www.kcab.or.kr).

을 청구하지 못하며,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의 경우에도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 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조치가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다투나, 동법 제69조 제2항은 위 규정은 매도인 악의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매도인인 피 신청인은 한국산 원사와 다르게 중국산 원사를 공급하여 악의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9조 제1항은 적용할 여지가 없고, 위 항변은 법률상 이유 없다. 3. 서증의 각 기재와 증언을 종합하면, 본건 스웨터를 수입한 U사가 신청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신청인이 U사에게 미화 48,746달러 당시 한화로 환산하여 금 48,412,994원을 배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38,730,395원(48,412,994원 x 0.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신청인의 본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중재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2는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제2절 계약 불이행 에 관한 무역 분쟁

계약불이행에 관한 클레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매매당사자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계약불이행(Non-Performance of Contract)이라고 한다.

둘째,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계약이 명백히 성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성립을 부인할 때에 제기되는 계약의 거절(Rejection of Contract)이다.

셋째,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해소한 경우에 그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로 구상하는 부당한 계약해제가 있다.³⁹⁾

39) 成鉞(2013). 전계논문

1. 계약 불이행 분쟁 사례⁴⁰⁾

(1) 사건개요

한국 수입기업(이하 “한사”로 칭함)은 2003.8.14 중국 수출기업(이하 “중사”로 칭함)으로부터 Ferro Molybdenum (이하 “상품1”로 칭함) 2컨테이너 (40 M/T)를 미화 301,200달러에 구매하는 내용의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같은 물건을 중재 외 상품1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에 의하면 한사와 중사 간의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기로 약정하였다.

한사는 이 구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3.8.18에 중사를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발행하는 등 매수인으로서 의무를 하였다. 이 계약상 선적기한은 2003.9.10 이었고 중사는 중국 국내 전기 공급 중단 등에 따른 생산 차질 등을 이유로 공급이 곤란함을 주장하면서 2003.9.9 무렵 한사에게 협상에 의한 해결을 요청하였다. 한사는 상품1에 대한 공급계약 이행을 위하여 2003.9.16 중국 소재 공급자로부터 대체 상품을 미화 354,000 달러에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중사의 이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한사는 대체구매계약을 통한 이행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선적 기일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미화 5,202 달러의 지연 배상금을 청구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사는 신용장 개설비용으로 미화 520달러를 부담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중사는 상기 주장에 대해 중국 정부의 지시에 의하여 전기 공급이 중단되어 생산 및 공급을 할 수 없게 된 것인 바, 이러한 사유는 한사와 중사간의 이 구매계약 제2조 소정의 불가항력 사태로서, 중사는 이 구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구매계약 제2조에 의하여 불가항력 사태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태 발생 후 20일 이내에 “relative authority” 또는 “local commerce”가 발행한 그에 관한 증명서를 상대방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중사는 그런 증명서를 발급받아 한사에게 제공하였다는 아무런 주장과 입증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하는 한사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0) 대한상사중재원(2003),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 제03113-0023호.

중사가 주장하는 이러한 불가항력은 항변 이유가 될 수 없으므로, 중사는 이 구매계약 불이행에 따른 한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사의 손해는 이하 3가지가 있다. 첫째, 대체구매계약 금액과 손해를 배상금액 간의 차액인 미화 52,800달러. 둘째, 대한 지연 배상금 미화 5,202달러. 셋째, 이 구매계약 이행을 위하여 한사가 지출한 신용장 개설비용 미화 520달러 합계 미화 58,522달러로서 (참고로, 한사는 계약에 따른 희망이익 미화 4,800달러에 관하여는 신청을 취하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사가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중사가 한사에게 미화 58,522달러 및 한사가 구하는 바 이 중재신청일인 2003.12.11부터 완제일까지 그에 대한 소정의 지연이자인 연 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중재비용은 전액을 중사가 부담한다.

2. 계약 성립조건에 대한 분쟁 사례⁴¹⁾

(1) 사건개요

신청인 L은 사료용 곡물 수입회사이고 피 신청인인 K는 중국 산동성 무역대표부로서 한국에 곡물을 수출하는 회사이다. K는 1996.1.16 L에게 중국산 채종박 2,000톤과 면실박 2,000톤 등 2건의 매매계약에 관한 물품매도확약서를 보냈으며 L은 즉시 이를 승낙하는 의미에서 이 확약서에 기명날인한 후 K에게 당일 Fax로 송부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K는 96.1.18 L에게 중국에서 매매계약 목적물인 곡물을 운송할 선박의 상세한 내역까지 통보해 왔다. L은 K가 이 계약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믿고 국내 실수요지와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3일 후인 96.1.19 아침 갑자기 K는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여 L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L은 주장내용은 K와 체결한 매매계약은 적법하므로 K는 물품매도확약서에 부기한 한국 사료협회 일반약관의 손해배상조항에 의거하여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59,800 USD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K는 L에게 발행한 청약서는 확정오퍼가 아니라 L이 승낙할 시점까지 청약철회가 가능한 오퍼이다. 1996.1.16 채종박 2,000톤과 면실박 2,000톤에 관한 매도 청약서를 Fax로 L에게 송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L의 주장처럼 L이 기명날인한 청

41) 대한상사중재원(1997), 「무역계약서의 청약의 성립과 소멸」, 중재 제284호, pp.99~104

약서를 1996.1.16 받은 것이 아니고 1996.1.22에 접수하였다. 그러므로 L의 승낙이전인 1996.1.19 L에게 구두로 전달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는 유효한 것이다. 따라서 이 계약은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은 것이므로 K가 계약당사자로 책임질 성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결과 및 분석

중재판정은 판정주문에서 K는 L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다. 중재판정부의 판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제출된 입찰공고, 팩스 송신 기록, 각 매매확인서를 비롯한 관련증거 및 증인의 증언내용과 변론의 전취를 합하여 보면 L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법 및 사기에 K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승낙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같은 일 시경 K 또한 이러한 승낙의 통지를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하는 한편,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L이 주장하는 1996.1.16에 체결된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K가 L에게 구두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이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후인 것이 명백하여 K의 주장은 K가 그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결과에 다름 아니다.

이행보증금에 관한 합의내용을 살펴보면 물품매도확약서 말미에 "All other conditions as per Korea Feed Association Term" 라고 기재되어 있어 한국자료협회 일반약관 및 이행보증금 비율이 적용되어야 함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행보증금 비율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이행시기 연장 및 계약조건 재협의 진행과정에서 5% 수준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것이 L의 진정한 의도였던 것으로 인정되고, 이 사건 사안의 전체 흐름에 비추어 보다 합당하다.

그러나 L은 K가 소규모 영세거래중개인으로서는 사료용 곡물거래경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K의 대표와는 전혀 의사교환이 없었으며, 고용 임원하고만 전적으로 협의하는 등 계약조건 합의 및 이행을 보다 주도면밀하게 이끌러가지 못한 과실이 일부 있다고 인정되어 매매계약대금의 5%인 29,900 USD를 기준으로 L의 과실비율 정도를 참작하여 L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이를 20,000,000원으로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요지이다.

이 사건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청약과 승낙의 개념이 특히 부각된 사건이다. 청약이

라 함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도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한편 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의 효력의 발생 시기는 청약과 같은 도달주의이다.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사법상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3. 계약이행을 거절한 분쟁 사례⁴²⁾

(1) 사건개요

1990.10.23 중국 북경 거주 신청인 L은 수입상 대리인인 A를 통하여 중국산 시멘트를 한국의 수입자 K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A는 K의 대리인임을 L에게 설명하였다. 계약내용은 L이 피 신청인 K에게 중국산 시멘트 10,000톤을 공급하고 K는 그 대금으로 US\$ 470,000(톤당 US47)을 L에게 지불하는 것이다. K는 X은행 대구지점을 통하여 L을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였다. A는 운송인 Y해운주식회사와 1990.10.25 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L은 그 용선선박에 1990.11.1 중국 석도항에서 시멘트를 선적하고 1990.11.3 군산항에 도착하였다. 1990.11.5 K는 L에게 인수에 필요한 선적서류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였고 L은 같은 날 선적서류를 K에게 전송하였다. 그러함에도 K는 화물인수를 거절하였고 대금지급도 거절하였다. 그리고 K는 시멘트 가격을 최소한 50% 할인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L은 이를 거절하였다.

한편, Y는 K에게 용선계약에 의거하여 운임 US\$ 165,676,50 및 체신료 US\$ 113,820,40을 지불할 것을 청구하였다. K가 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Y는 선박에 유지하고 있던 화물을 경매하기 위하여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0.11.22 Y는 법원으로부터 경매결정을 얻어 화물의 경매를 시작하자 K는 1990.12.8 운임을 지불하였다.

반면에 L은 법원이 경매절차정지 가처분 소를 청구하여 경매절차정지허가를 받은 후

42) 김상호(199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발생과 당사자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상학, 14권 2호, p598-602.

Y와 협상 끝에 1991.4.8 US\$ 112,500(톤당 US11.25)의 할값에 Y에게 판매하였다. 그리고 L은 시멘트 계약금액 US\$470,000중 L이 Y로부터 받은 US\$ 112,500을 뺀 금액, 즉 US\$ 357,500의 손해배상을 K에게 청구하는 중재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 신청인 K는 변명 서에서 자기와 A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따라서 A가 K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없고 K자신이 L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면 중재조항에 합의한 사실조차 없다. 그러므로 여하한 금액도 L에게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결과 및 분석

사실을 L에게 알리고 시멘트 구입의사를 표시하였다. 중재판정부의 판정문서에서 K는 L에게 US\$ 357,500를 지불하라는 L의 완전승소판정을 내렸다. 그 판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1990.10.23 L과 A사이에 체결한 계약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A가 K의 직원이 아니었으며 A가 L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그러한데다가 L은 A가 K를 대리하여 행위 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K가 A와 전혀 관계가 없고, K가 L과 계약체결을 원하지 않았다면 K는 가능한 빨리 이 사실을 L에게 통지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K는 L을 수익자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또한 시멘트가 군산항에 도착한 1990.11.5에도 K는 선적서류의 접수사실을 L에게 알리고 시멘트 구입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K는 처음으로 시멘트 대금지불을 거절하였다. 당시에 K는 시멘트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주장은 하지 않고 단지 시멘트 가격의 감액만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K는 자기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하던 시멘트의 운송비용 US\$ 165,676,50을 Y에게 지불함으로써 A와 Y사이에 체결한 계약을 적어도 부분적이나마 K 스스로 이행하였다.

이러한 모든 사실들은 A가 원래 K를 위한 대리인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A와 L간의 계약을 K가 수락하고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K는 A가 대리한 행위의 본인으로서 법적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계약서에서 합의한 시멘트 금액을 L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물품매매계약상 미지급물품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분쟁사례⁴³⁾

(1) 사건개요

판정부는 피 신청인의 불출석으로 상사중재규칙 제37조에 의거 중재절차를 진행하였다. 신청인이 제시한 증거서류의 각 기재내용과 심문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은 SK7066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물품을 미화 52,625.70달러 상당 분을 선적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대금결제조건으로 CASH AGAINST PAYMENT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후 피 신청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SK7086계약서에 의해 신청인에게 1개월 이내에 결제 약속을 하고 물품 미화 61,813.05달러 상당분의 선적서류를 양수하고, 물품대금 일부에 대해 분할 지급하였으며, 일부물품에 대해 반납을 하였으나, 이것이 SK7066계약서와 SK7086계약서 중 어느 것에 대한 대금결제인지 불분명하게 만들었고, 신청인 또한 피 신청인의 약속 의사만 듣고, SK7086계약과 관련한 선적서류를 양도하여 무역실무상 주의를 기울리 함으로써 대금회수불능상태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신의성실에 입각한 무역거래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본사건의 원인제공은 피 신청인 측에 있다고 판단된다.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계약서 체결당시, 향후 분쟁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정하지 않았으나, 이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거래지속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간주할 수 있고, 대금지급거절의 분쟁이 발생한 후 신청인이 피 신청인을 방문하여, 분할상환합의를 하고 이에 대한 모든 분쟁은 신청인의 나라에서 중재로 최종해결하며, 신청인이 한국인 경우에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한 바, 신청인과 피 신청인간에 미지급 대금에 대한 다툼이 없다. 피 신청인은 상사중재가 신청되었다는 사실과 참석통보에 대해 불응하고, 피 신청인의 대표자 P씨가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서신을 본 원장 앞으로 발송하고 일체의 심문에 응하지 않았다.

(2) 결과 및 분석

신청인이 1999년 2월 23일 대한상사중재원에 본 건에 대해 상사중재를 신청하고 대한상사중재원에서 피 신청인에게 1차 심문기일을 4월 24일로 통보하고 나서야 피 신청인은 1999년 3월 18일자 FAX서신에서 본 건과 관련하여 1998년 9월 7일 합의 작성한 지불동의서에 P씨 자신이 서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만 밝히고, 2차 심문기일인 5월

4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991130002 (www.kcab.or.kr).

30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의 각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 신청인의 서명은 일관성이 없고 피 신청인이 지불동의서에 기재된 서명을 부정하는 그 자체에 대해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피 신청인은 신청인이 물품의 일부에 대한 반품을 허용하고 현지까지 방문하여 지불동의서를 작성하는 성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단지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 대금지급연기 및 물품의 반품을 요구함과 동시에 신청인이 상사중재절차를 진행하고 나서야 지불동의서의 서명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입증자료도 없고 또한 계약과 쌍무계약 그리고 보상계약을 근거로 신의 성실에 입각하여 성립되는 것임을 전제로 할 때 피 신청인의 주장은 불충분하고 타당치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모든 계약 및 합의가 일방의 부인에 의해 파기된다면 모든 거래질서 및 도덕이 파괴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배척해야 할 대상이고 법의 정의 실현은 상식을 가진 일반인들의 수준에서 부도덕한 사실들을 제거하는데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물품대금 US\$48,651.32을 지급하되 이에 대한 1999년 2월 23일부터 중재판정일까지는 연 6%의, 중재판정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5. 매매계약에 기한 물품 잔대금 지급청구에 관한 사례⁴⁴⁾

(1) 사건개요

피 신청인은 신청인을 통하여 러시아산 어분을 C&F, F.O.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중국 수입상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위 삼각무역을 수행해온 무역업체이다. 이 건 계약에 기하여 러시아 어분을 선적한 선박이 중국 풍조우항에서 하역하였는데, 어분의 양하과정에서 해수침수로 인하여 어분이 부패 변질되고, 구분 선적이 잘되지 않았음을 수하주(수입상)로부터 사실을 연락받은 후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통보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게 선장으로부터 사실 확인서를 받

44)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971110035 (www.kcab.or.kr).

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 신청인은 선장의 완강한 거절로 서명을 받지 못하고 손상 화물목록과 선박대리점의 화물손상확인 서신을 신청인에게 전달하였다. 신청인은 피 신청인에게 SGS의 검사보고서 제출요구와 클레임협의 처리코자 하니, 잔금 10%에 해당하는 금액마저 송금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 신청인은 잔금지급요청은 거절하였고, SGS 검사보고서를 제출 하였으나, 클레임 청구용으로 쓰기에는 부적합하였다. 그래서 신청인과 피 신청인과 함께 CCIC에게 검사를 정식 요청하여 검사보고서를 받게 되었다.

(2) 결과 및 분석

어분의 침수부패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러시아 공급자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하겠으며, 신청인은 피 신청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협조요청을 받고도 선량한 계약자로서의 최선의 의무와 신속, 민첩한 협조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신청인은 적절한 검사 보고서상 적정기일 내에 입수 및 제출할 수 없어 적절한 품질클레임 대책을 세울 수 없음을 들어, 품질클레임(단백질 함량미달에 대한 품질하자에 인한) 문제해결 전에 러시아의 어분생산 공급업자에게 지불 완료한 사실은 선량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최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피 신청인이 반대 청구하는 손해에 관하여, 신청인은 침수로 인한 부패 변질된 어분에 대한 피해액은 피 신청인의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품질하자로 인한 클레임도 피 신청인의 검사보고서 작성지연으로 인한 변상기회 상실도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판단컨대,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피 신청인의 부담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피 신청인의 상계주장 청구는 이유 없다. 검사지연으로 인한 부패, 변질의 확대손해는 양 당사자가 반분함이 합당하다. 가공불량과 단백질 함량미달손해는 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신청인이 부담(피 신청인의 과실 참작하여 1/10을 피 신청인의 부담)한다.

6. 운송계약상 초과지급운임 반환에 관한 사례⁴⁵⁾

(1) 사건개요

피 신청인은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을 판단하면, 중재신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재 합의가 존재해야 한다. 어느 자료에도 신청인과 D사 사이에 중재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다.

피 신청인의 H통상 및 R사에 대한 청구를 판단하면, 신청 외 N물산 외 7개 원양선사와 피 신청인 R사 사이에 동 원양선사들이 포클랜드에서 어획한 오징어를 냉동상태로 한국의 부산항까지 운송하기로 하는 계약서가 체결되었다. 신청인은 피 청인 R사의 운반선인 E호에 선적한 냉동오징어를 매입하여 이를 중국 F사에 전매하기로 하였다. 신청인은 이를 위하여 피 신청인 R사를 대리한 피 신청인 H통상과 성약서와 운송변경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체결당시 R사를 대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피 신청인 H통상은 운송인을 대리하여 운임선불기재가 된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신청인은 선적 화물계량결과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였다. 이견 선박이 양하항인 후조우에서 신청인이 SGS 검정인을 선임하여 실제중량이 운반선 계량중량보다 훨씬 낮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물량부족이 발견된 이후 신청인은 F사에게 송장금액 5%를 포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 외 N물산 외 7인은 매각대금의 잔대금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 신청인 R사는 운송계약 당사자로서 초과운임을 반환해야 할 것이다. 피 신청인 R사는 D사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내부적으로는 대리인이 인정되나, 대외적으로는 당사자 본인으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건 운송계약은 피 신청인 R사가 당사자본인이다. 피 신청인 H통상은 신청인으로 하여금 마치 당사자 본인으로 오인케 하였으므로 상법 48조 단서에 의한 R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피 신청인인 H통상은 단순대리인이라는 것을 신청인이 알았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수산물거래 경험이 일천하고, H통상과 처음 거래한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알았던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운송계약서에 의하면 분쟁은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기로 합의한 점이 인정되나 대리행위의 준거법은 한국 법이라 할 것이다. H통상은 상법 제48조 단서에 의해 피 신청인 R사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피 신청인 R사는 운송계약상 운송인으로, 피 신청인

45)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971130027 (www.kcab.or.kr).

H통상은 대리인으로 상법 제48조 단서 규정에 의해 연대하여 신청인이 초과 지급한 운임을 반환해줄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액수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 신청인 H통상 및 피 신청인 R사는 실제 양하된 화물의 중량과 운반선의 계량중량의 차이인 281,1631톤에 대하여 지급운임인 미화 65,229.84달러(281,1631톤 X 232)를 신청인에게 상환할 책임이 있다. 운임은 미화로 지급되었으므로 피 신청인들도 미화로 지급함이 옳다. 신청인은 부족분에 대한 청구를 한다. 그러나 이 건과 같이 선하증권이 발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선의의 취득자인 화주가 그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유한다고 할 것인바, 부족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중국의 수입자가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은 선하증권의 기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권원이 없다. 신청인은 운송계약서 제20조에 근거하여 부족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주장하나 원래의 계획대로 부산항에 하역되어 신청 외 N물산에 인도된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양하항과 수하주가 바뀌었을 때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과 및 분석

피 신청인 H통상 및 피 신청인 R사는 연대하여 미화 65,229.84달러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청구하는 범위내의 지연이자를 붙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동 피 신청인들에 대한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 신청인 D사에 대한 중재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중재비용은 신청인과 피 신청인 H통상 및 동 R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는 동 피 신청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하며, 신청인과 피 신청인 D사 사이에 생긴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제3절 다른 원인에 관한 무역 분쟁 사례

1. 규격이나 검사기준차이 분쟁 사례⁴⁶⁾

(1) 사건개요

한국 수산회사(이하 “한사”로 칭함)는 중국대련무역회사(이하 “중사”로 칭함)와 중국대련에서 총 미화73,000달러의 냉동 수산물을 수입하는 무역계약을 체결했다. 대금 지급 방식은 신용장으로 지급하여 가격조건 CIF부산항까지로 체결한다. 동시에 제품의 품질, 수량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30일 이내 중국국제경제중재위원회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계약한 후 중사는 화물을 계약대로 가공하여 운송회사로 부산항까지 선적하였다. 중사는 선하증권과 요녕성 수출입검역국에서 발급한 검역합격보고서를 첨부하여 신용장대금을 지급 받았다.

계약 화물이 한국에 도착한 후 한국수산물품질검사원의 검역해서 불합격상품으로 판정되어 중국 쪽으로 반품이나 소각해야 했다. 한사는 즉시 중국으로 반품하여 30일 이내 중국 중재위원회에 대금환불과 배상금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중사는 세관창고에서 보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반환된 물품을 반출하여 처리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이 사례에서 한사의 의견은 계약화물을 한국에서 검역한 결과 불합격됨으로써 중국으로 반품이나 소각하는 명령에 따라서 화물의 한국까지의 수출입 계약이 이미 실현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한사는 중국으로 반송하고 대금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사가 아무런 반대의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반환된 화물을 찾아서 처리한 바, 실질적으로 계약해제를 구성하는 화물과 대금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은 불법수익이므로 대금 환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중사는 수출 절차로 수출 상품을 이미 중국에 있는 수출 검역기관에서 검역하고 검역

46) 완레이(2010), 「한·중 간 무역클레임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논문, pp.41~43.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수출에 합격한 상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한사는 아무런 통지 없이 반품한 행위는 한사의 일방적인 부당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중재 판정부는 무역 계약서 내에 어느 나라의 검역을 표준으로 정하지 않았고 한사가 아무 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반품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고 판단하였다. 국제상거래에서 물품 하자나 품질불량으로 인한 클레임은 많이 발생한다. 물품 계약 시 반드시 상품의 규격이나 검역표준이나 검역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단 반품하려면 반드시 먼저 서면으로 상대방한테 통지하여 교류한 문서나 편지 등의 증거를 잘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서 중 검역기관과 검역표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서 중사는 수출한 상품이 중국 요녕성 수출입검역국의 검역합격증명서로 보면 합격상품이라고 주장한다. 한사가 중사에 미리 연락하지 않아서 직접 화물을 반환하는 바, 부당행위이고 중사는 창고보관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화물을 처리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이다. 중사는 한사가 요구한 대금 환불과 배상금 지불의무가 없으며 중재비용은 한사가 지급한다.

2. 선적 및 납기불이행 무역 분쟁 사례⁴⁷⁾

1) 사건개요

수입자는 중국무역회사(이하 “중사”로 칭함)하고 한국 무역회사(이하 “한사”로 칭함) 사이에 2002.9.9에 미국산 아세톤(화학제품) 1000톤을 중국 Ningbo항까지의 운임을 포함하는 조건 CFR조건으로 톤당 미화510달러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사는 이 사건의 물품을 미국의 공급자인 C사로부터 매수하여 중사에게 전매하기로 했다. 2002.9.9에 C사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아세톤 생산이 일시 중단되었고 이로 인하여 C사는 2002.9.11에 한사에 대한 불가항력으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으로 선언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사는 즉시 중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 사건을 매매계약에 따른 신용장을 개설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중사는 C사 공장의 화재사고는 한사의 계약불이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매매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한편, 중사는 스스로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2002.9.12에 미화 795달러를 들여 이 사건 신용장을 개설하였다.

47) 대한상사중재원(2003),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03112-0002호 (www.kcab.or.kr).

한사는 2002.9.25에 중사에 대하여 C사공장의 화재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확정적으로 통지하였다.

중사가 이 사건의 물품에 대하여 대체물품을 매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약1주일이고 2002.9.21에서 2002.10.4까지 중국 내에서의 아세톤 수입가격은 운임포함조건으로 평균 톤당 미화 585달러이다. 그래서 중사는 한사에게 현금 191,057,265원 손해배상 클레임을 제기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일단 이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분석한다. 이 사건 과정에 의하면 한사는 2002.9.25에 중사에게 확정적으로 이 사건의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신청인은 한사에 대하여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한사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데 한사는 계약에 따라서 이 물품의 공급자로서 제어할 수 없는 기타 원인의 이유 때문에, 계약의 수행이 전체적으로 방해된 경우 한사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한사는 C사공장 화재가 불가항력 이유라서 이 계약의 불이행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계약서를 다시 자세히 보면 계약서 중에서 “미국산 아세톤” 만 있어서 “C사가 공급이나 제조한 아세톤” 아니다. 그렇게 보면 한사가 중사에게 공급하는 상품은 미국산 아세톤이라고 이해된다. C사공장의 제조한 제품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면 한사가 C사공장 화재 때문에 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하면 안 된다.

이는 계약 내용을 충분하고도 확실하게 하지 않은데서 기인한다. 만약에 이 계약서에서 명확하게 “C사는 공급자” 나 “C사공장의 제품” 으로 규정한다면 한사가 이 계약을 불이행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피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92,917,091 원 및 이에 대해 2002.9.30부터 2003.3.24까지는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였으며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신청인과 피 신청인이 각 1/2씩 부담하였다.

3.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사례⁴⁸⁾

(1) 사건개요

신청인은 신청 외 농수산물 유통공사로부터 참깨수입권을 낙찰 받아, 낙찰 받은 물량 중 200톤에 관하여 피 신청인들과 사이에 각 100톤씩의 참깨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 외 농수산물 유통공사에게 참깨 200톤에 대한 이행보증금 금 76,000,000원을 납부하였으며, 신청인이 1997. 8. 25.까지 참깨를 수입하지 아니할 경우 국고에 귀속하도록 약정되어 있었다. 신청인은 피 신청인들에게 공급할 참깨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국의 신청 외 0무역공사와 사이에 참깨 200톤에 대한 수입계약을 체결한 다음 계약조건에 따라 피 신청인 C씨의 아버지 신청 외 G씨(피 신청인 L씨의 겸수권한도 위임받음)와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신청 외 0무역공사가 제공한 황백참깨와 흑깨에 대해 검수 절차를 실시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G씨는 흑깨에 대해서는 인수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반면 황백참깨에 대해서는 선적해도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신청 외 0무역공사에게 선적지시를 하고, 0무역공사는 통관 및 선적을 완료하였으나, 피 신청인들은 같은 날 황백참깨마저도 계약에 규정된 상품이 아니라고 하여 거절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 외 0무역공사에게 선적 중단 통보를 한 한편 피 신청인들과 사이에 중국 현지 물량 재 수배를하기로 하고 피 신청인들과 함께 신청 외 0무역공사가 제공한 다른 참깨에 대한 2차 품질검수를 행하였으나, 피 신청인들로부터 거절되었으며 제3차 품질검수의 경우에는 피 신청인이 만족하자, 참깨 Kg당 가격을 상향조정하고 통관기일 도과에 따른 고율관세를 부담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인이 확답이 없자 수입을 포기하고 1997. 8. 25. 신청 외 농산물 유통공사와 사이에 통관기일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이행보조금을 정부 기금에 귀속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결과 및 분석

4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971110055 (www.kcab.or.kr).

피 신청인들의 인수 의사표시를 번복함으로써 신청인에 대하여 이미 통관 및 선적을 완료한 황백참깨에 대한 수령거절의 계약위반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피 신청인들은 이에 대해 황백참깨에 대하여 명시적 인수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제반 사정에 미루어 볼 때에 적어도 묵시적 인수승낙을 하고 선적을 용인하였을 것이므로 인수 의사표시 흠결 주장은 이유 없다. 더 나아가 피 신청인들은 제1차 품질검수 이외에 제2차, 제3차 품질검수를 행하였으므로 제1차 검수대상인 참깨에 대하여 품질조건인 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제2차, 제3차의 검수절차의 시행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또 다른 입증자료로 볼 수 없는 이상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 신청인들이 신청인의 권리포기 주장만 하고 입증하지 아니한 본건에 있어서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배상 등 제반의무를 피 신청인이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신청인에게도 계약이행과정에서 피 신청인들의 계약위반에 따른 수습이나 손해범위의 제한에 있어서 충분히 계약당사자 일방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보여 이를 손해배상 액수산정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신청 외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으로 금 76,000,000원을 급하였고, 이는 피 신청인들의 수령거절로 인한 손해로 볼 것이므로 피 신청인들은 각 금 38,0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청구한 손실액 등은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계약이행과정에서의 신청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볼 때에 피 신청인이 부담케 하기는 형평상 부적절하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 신청인들은 신청인에게 본건 매매계약의 이행보증금으로서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 53,0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다툼이 없는 바, 결국 피 신청인들은 각 금 15,000,000원씩 반환 받을 수 있으나 피 신청인들이 계약위반을 야기한 점을 감안하여 이 중 2분의1에 해당하는 금 7,500,000원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4. 공급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사례⁴⁹⁾

(1) 사건개요

A사와 B사는 1999. 7. 1.자로 B사의 △비료공장에서 생산되는 원료탄산을 A사의 ○공장에 공급하기로 하는 탄산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내용 중 계약기간은

4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021110052 (www.kcab.or.kr).

3년, 계약만료 6개월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A사는 ○○공장에 총 3천4백 톤의 저장능력을 갖춘 저장시설을 준공하고 노후화된 각종시설과 장비를 교체 증강하였으며 증가된 생산능력에 맞추어 대리점을 확대하고, 거래선을 대폭 확충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던 중 B사가 2001. 12. 경에 접어들면서 납사와 암모니아의 국제가격 변동으로 질소질 비료를 생산하는 채산성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이유로 질소질 공장의 가동중단을 검토한 후 2002. 1.경 원료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지하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A사에게 발송하고 2002. 2. 18일부터 질소질공장의 가동을 중단하자 A사는 B사의 질소질공장에서 생산되는 원료탄산에 공장의 가동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왔고, ○○공장의 구조자체가 B사의 공장과 연계하여 설계되고 존재하여 왔으므로 B사의 원료탄산의 공급중단으로 인하여 A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중재를 신청하고 B사의 2002. 1. 7.자 서면에 의한 계약종료의사 통보는 계약서가 정한 통보시한인 2001. 12. 31.을 넘긴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은 2005. 6. 30.까지 자동연장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B사는 이 사건 계약은 3년간으로 계속적 공급계약이기는 하나 A사가 B사의 잉여탄산가스를 전량 또는 일정량을 인수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이 없고 반대로 B사가 잉여탄산가스의 전량이나 일정량을 A사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이 A사는 익년 연간 탄산가스 인수계획을 월별로 10. 31.까지 작성하여 B사에게 통보하고, 매분기별로 사용계획을 분기 개시월 이전까지 B사에게 통보하면 B사는 A사의 인수계획 물량을 감안하여 조정 공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탄산가스의 특성상 잉여량의 물량이 가변적이기 때문에 A사에게 공급량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았고 A사에 대하여도 인수량에 대한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질소질 공장 가동정지에 대하여 A사에게 사전에 통보를 한 사항이며 A사측의 ○○공장의 운영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된 관계로 이를 개보수해야 될 상황이었다고 항변한다. 또한 A사는 계약만료 6개월 이전부터 2002년 일정시점에 질소질공장의 가동을 정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2001. 12. 21.자로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의사를 통보한 바 있으므로 계약은 2002. 6. 30.까지 자동연장없이 종료되었고, B사가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한 A사와 신청 외 C사에 대한 상당한 기간전의 사전예고를 거쳐 장기공급계약을 2002. 2. 15.자로 해지한 조치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지권으로 정당한 것으로써 A사에 대한 B사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한 탄산가스공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도 주장한다. 끝으로 B사의 질소질공장의 가동정지로 A사의 ○○공장 시설중 일부인 액체탄산가스 제조시설 부분이 가동정지상태에 놓인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대안을 찾지 못한 책임을 B사에게 전가하는 것은 B사는 항변한다. 이에 대해 중재판정부는 B사

의 계약종료 의사통지는 B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비료사업의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문서상 통보일자가 기간만기 6개월 이전이라는 통보시한보다 불과 7일간 늦어진 점, 통보시한 이전에 질소질공장 가동 정지의 불가피성을 여러번 통지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의 계약은 2002. 6. 30.자로 종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국내외적인 환경변화가 이 사건 계약을 예견불가능한 것이었거나 기존 계약의 중도해지의 효력까지 인정할 정도의 현저한 사정변경은 없었다고 판단하여 B사가 2002. 2. 18.부터 계약 종료일까지 가스공급을 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였다.

(2) 결과 및 분석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손해 합계금액과 이에 대한 2002. 2. 18.부터 이 사건 판정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푼, 판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특례법(2003. 6. 1.부터 시행된 개정법률) 소정의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한 것으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며,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중재규칙 제61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 하였다.

5. 결제방식이 명확하지 않아서 지급을 거절한 클레임 사례⁵⁰⁾

(1) 사건개요

한국의 수출업자는 중국의 수입업자에게 여성용 스웨터를 수출하기로 하였다. 이때 지급방식은 신용장으로 정하여 수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중국의 수입업자는 결제조건을 신용장거래방식에서 무신용장거래방식인 추심방식(D/P 또는 D/A에 관한 표시가 없음)으로 변경을 요청하였고, 수출업자는 이에 동의하였다. 수출업자는 계약상품을 선적한 후 관련서류를 추심의뢰은행을 통하여 추심은행에 추심을 의뢰하였다. 추심은행은 운송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하였고 수입업자는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추

5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내부교육자료, 「중국 무역클레임」 자료.

심은행으로부터 인수한 운송서류로 상품을 수령하였다.

이와 같이 상품대금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에 대하여 수출업자는 D/P와 D/A중에서 어떤 기준에 근거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인지를 아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결과 및 분석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 제정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niform Rules for Collections, 1995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22) 제7조 b항에서는 “만일 추심이 장래확정일 지급조건의 환어음을 포함하는 경우에 추심지시서에 인도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그러한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상업서류는 지급과 상황으로만 인도되어야 하며, 서류인도의 지연에 기인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서도 추심은행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추심은행이 D/P 또는 D/A인지가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추심의뢰서를 D/P조건으로 간주하지 않고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 것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7조 b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추심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운송서류를 D/P조건으로 인도하지 않았으면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업자는 추심은행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출업자는 계약물품이 수입지국에 보관된 상태로 있다면 제3자에게 전매를 하거나 Ship Back 또는 공매처분할 수 있으나 수입업자가 추심은행으로부터 인도 받은 운송서류로 물품을 찾아갔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상대로 현지 법원을 통하여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장 한중 무역 분쟁의 대응방안

제1절 한중 무역 분쟁의 대응방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11년 110.30%로 G20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무역의존도는 2009년 95.76%로 사우디아라비아

(96.66%)에 이어 2위였으나 2010년 101.98%를 기록하며 1위로 올라선 뒤 2011년에도 G20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중에서 대 중국 무역의존도는 2011년에 22.5%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무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중요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고, 중국과의 무역관계는 더욱 심화되는 추세를 보인다.

한편, 중국은 WTO 가입 이후 많은 분야를 개방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합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할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2003년 3월에는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상무부를 출범시켜 비관세장벽 등을 통한 수입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무역 분쟁의 예방대책으로는 언어와 상관습에 대한 이해와 국제시장조사 및 거래상대의 신용조사의 필요성이 강조되며 또한 계약당사자들의 이행능력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면밀히 작성하고 계약물품의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⁵¹⁾

1. 거래상대방의 신용조사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결제조건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신용위험의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역거래를 하기 전에 상대방의 신용상태(credit standing)에 대하여 엄격한 신용조사를 하여야 한다. 신용조사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조사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는 것으로는 상대방의 재정상태(capital), 거래능력(capacity), 품성(character) 등의 이른바 “가 기본 요건이며 국가(country)와 통화(currency)를 추가하여 5C's⁵²⁾로 하기도 한다.

거래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대방의 신용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용조사전문기관을 이용 할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신용조사전문기관으로는 미국의 Dun & Bradstreet International 있고, 한국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신용보증기금, 수출입은행, 한국수출보험공사 등이 신용조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에는 중국신용조사중심, 중국신용조사회사 등이 있다.

51) 成鉞(2013), 전계논문

52) 재정상태(capital): 해당업체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과 납입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기타 자산 상태 등 지불능력과 직결되는 내용. 거래능력(capacity): 해당업체의 연간 매출액, 업체의 형태(개인회가, 회사형태, 공개여부 등), 연혁 내지 경력 및 영업권 등 영업능력에 관한 내용. 품성(character): 해당업체의 개성, 성실성, 평판, 영업태도 및 의무(특히 채무변재), 이행열의 등 계약이행에 대한 도의심에 관련된 내용. 국가(country): 상대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태. 통화(currency): 상대국의 통화 상태를 의미한다.

2. 계약서의 전면적으로 작성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구두로도 성립되며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하는 것⁵³⁾은 아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당사자 간 공통적이고 포괄적인 합의사항⁵⁴⁾은 미리 합의해 두고 가변적인 거래조건은 매 거래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해 확정하는 방법⁵⁵⁾이다.⁵⁶⁾계약은 계약당사자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체결이 된다. 계약서 작성기초지식은 첫째, 원문과 역문과의 관계를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⁵⁷⁾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당사자의 언어와 영문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여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일방의 언어로 작성된 계약서만 인용할 경우에는 부담이 되어 계약서를 잘 보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계약서 작성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며 계약서는 반드시 전문 표준계약서 양식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통역을 사용할 경우에 충분한 의사전달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통역이 중간에서 잘못 전달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역이 통역을 하면서 사업내용을 잘 알게 된 것을 계기로 중간에서 사업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둘째, 통상적으로 공증이라고 하는 것은, 문서가 공증인에 의하여 작성되는 공정증서의 경우와 사인 간에 작성된 문서에 공증인이 정당하게 서명 또는 날인되었음을 확인 하는 인증이 있으며, 사회생활 가운데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여러 가지의 사항들을 법에 기하여 공정으로 증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다.

계약서는 분쟁을 예방하기도 하며, 발생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선은 계약서 성립의 기본조건을 세밀하게 체결해야 한다. 나아가 계약주체, 수량, 선적, 대금결제, 보험, 불가항력, 클레임 및 중재조항, 준거법에 관한 사항으로 정형화시켜야 한다. 클레임조항과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을 삽입해두어야 할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대한상사중재원의 표준중재조항에 대해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지 주의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조항을

53) 중재계약은 반드시 서면에 의한 합의를 요구함. (한국중재법 제2조 2호를 참조)

54) 일반거래약정서(General Agreement) 혹은 포괄계약서(Master Contract).

55) 매매계약서(Sales Contract) 혹은 개별계약서(Case by Case Contract).

56) 박병섭·송경석·신건훈·이병문·양정호(2003), 「무역실무」, p.86

57) 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작성의 기초지식 자료 참조정리.(<http://www.kcab.or.kr>)

삽입하여야 할 것이다.⁵⁸⁾ 계약서상의 클레임 제기기한을 확인한 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정식으로 클레임을 제기하고, 계약 시에는 약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라 착수해야 한다. 즉, 중재나 소송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면 동 절차에 따라 착수하나, 분쟁해결 절차가 약정되지 않았다면 양당사자가 그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서 해결할 것인가 혹은 제3자가 개입해 해결할 것인가를 협의하여 타협, 조정, 중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여야 한다.

대금결제 의 거절 및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분쟁발생시 해결방법, 계약의 준거법 등을 명시하는 구체적인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두어야 한다. 송금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소액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요망된다. 특히 중재합의에 관한 내용을 삽입하여 상대방이 중재제도가 불복 항소할 수 없는 단심제도인 것을 알고 있는 한 분쟁을 위한 빌미를 제공치 않을 것이다. 즉 중재조항자체가 분쟁의 예방적장치가 될 것이다. 계약체결 시 장래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설정하여 분쟁해결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해야 할 것이다. 그에 관한 실무적 접근으로 중재법 및 중재규칙의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무역 분쟁의 효율적 해결은 물론 무역사기의 예방책으로 무역관계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중재조항의 내용에는 중재 장소,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계약당사자의 거래조건 협상 시 중재 장소를 절충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국가이외의 제3국에서 중재가 진행되는 제3국 중재 장소가 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시간, 법 적용 등의 문제로 비효율적이다.

3. 국제거래관행의 정확한 이해와 사용

무역거래 당사자는 국제거래법규를 숙지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⁵⁹⁾,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or Documentary Credits”⁶⁰⁾,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58) 신군재(2006),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대한 실증연구」.

59) 이는 국제물품매매에 적용되는 무역관습 또는 거래관습(trade usage 또는 trade custom)을 표준화시킨 것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에 따른 법률적 문제들을 일일이 명시적으로 결정하는 대신 간결한 부호형태로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부호를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라 한다.

60) 국제무역에서 가장 주요한 지급수단인 신용장(letter of credit)의 형식, 내용, 해석 및 처리방법 등을 규율하는 국제적 통일규칙이다.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하였다.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⁶¹⁾등이다.

계약체결 시 거래당사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자세히 적어야 하고 이러한 서면조항은 나중에 분쟁발생시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즉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로 구성된다.⁶²⁾무역계약서의 구체적인 조항으로 화물의 품질, 수량, 금액, 포장, 규격 등이 규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각 조항에 대한 상반된 국제관습을 명확하게 당사자가 숙지한 상태에서 표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정형거래조건은 당사자가 이행할 계약내용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묵시조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함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야 한다.⁶³⁾ 그리고 발생 가능한 무역 분쟁에 대한 해결방법과 제기기간 등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즉, 우선 가장 합당한 정형거래조건을 선택한다.

어떤 조건은 표시방법은 같지만 다른 관습적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선택하여야 한다.⁶⁴⁾ 그리고 국제물품매매에 잠재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모든 발생가능 요소를 세밀하게 고려하고 선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사자 모두의 기준에 맞게 협상하여 일방에 치우치지 않은 평등한 조건을 선택하도록 한다.⁶⁵⁾

4. 표준중재조항의 활용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보다 중재가 효율적인 해결방안이라면, 중재조항을 신중하게 사전에 규정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무역 분쟁이 발생한 후에 서면의 중재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중재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조치 어렵다. 따라서 사후의 중재부탁 가능성을 믿기보다는 사전의 중재조항만이 클레임에서 교역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61) 1980년 UNCITRAL에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발효되고 있다.

62) 양영환·오원석(2002),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p. 132.

63) UN통일매매법(CISG) 제9조 제1항에는 “당사자들은 당사자 자신들의 동의한 관행과 당사자들 자신들 사이에서 확립된 관습에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들이 이를 그들의 계약 또는 계약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4) 손효진(2003), 「무역 용어와 수출계약의 관계」, 상업연구사, 제280기, p.28.

65) 우옥용(2004), 「국제무역용어의 실제사용」, 상해상업직업기술학원학보, 5권 3기, p9.

<표 5-1> 표준중재조항

구분	내용
표준중재조항	<p>“All disputes, controversies, or differences which may arise between the parti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contract, or for the breach thereof,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and under the Law of Korea. The award rendered by the arbitrator(s) shall be final and binding upon both parties concerned”.(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p>
약식 중재조항	<p>“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p>
신청인주의 중재조항	<p>“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the country of claimant. In case the claimant is (a Korean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In case the claimant is (a Chinese enterprise), the arbitration shall be held at the 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신청인이 한국기업일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신청인이 중국기업일 경우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에서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p>

자료:成鉞(2013), 韓國과 中國間 商事 紛爭 解決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4

5. 신용장과 클레임 대책

선적서류가 불일치 때문에 결제를 거부한 무역 분쟁 사례와 같이 무역거래에서 장래의 가격변동을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런 이유로 매수인이나 매도인은 계약서 상에 이상한 조항을 설정하여 상황이 불리하게 되면 그 조항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다.

유사한 경우로 매수인은 검사조항을 신용장에 설정하여 두었다가 수입하는 경우 손해가 예상되면 검사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에 수입업자(또는 그 대리인)가 특정서류를 발행할 것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경우가 수입업자 측이 발행하는 검사증명서를 요구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조건이 기재되는 사정을 고려해 보면, 우선 거래가 시작된 지가 일천하여 수입업자가 수익자(수출업자)가 공급할 물품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나 주문자상표부착수출(OEM)방식의 수출이어서 수입업자가 수입상품에 자사의 상표를 붙이기 때문에 그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다음으로 시황의 악화를 이유로 수입업자가 대리인에게 검사증명서를 발행하지 말도록 지시하여 사실상 신용장에 따른 결제의무를 면하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신용장거래는 물품의 거래가 아닌 서류거래로서 수익자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하고 제시된 서류가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지급을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진다. 이 경우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신용장의 수익자 자신이나 선사, 보험회사, 또는 검사기관 등의 제3자가 발행하게 되는데 이 제3자 중에서 수입업자(통상의 경우 신용장발행을 의뢰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 중 특정서류를 수입업자측이 발행하도록 요구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신용장의 취소불가능성이 부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하면 수입업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신용장거래의 특징이 파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⁶⁶⁾

제2절 정부 입장의 대응방안

첫째, 한국정부는 중국의 법규, 제도의 개선 과정에서 한국기업들의 대 중국 수출과 투자진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는 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조사가 필요하다. 특히, 중국 중앙정부의 관련 법규, 제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과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왜곡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그에 따라서 제도운영 측면의 왜곡과 지방정부 차원의 무역장벽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어야 한다.⁶⁷⁾ 둘째, 중국의

66) 박미영(2007), 「한·중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pp.51-57.

67) 저우예페(2009),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한중 무역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 석사논문, pp.53-56. 사논문, pp.53-56.

반덤핑 조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부활동을 하고 필요시 대정부항의까지 필요하다. 또한, 법에 보장된 덤핑 재심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예비판정에서 부과된 덤핑관세율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한다. 사례에서 보면 재심 청구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한 제품의 평균 덤핑 관세율이 6.5%였던 것에 반해, 대응하지 않은 업체들의 평균 덤핑 관세율은 57.9%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의 경우 전문가를 통한 협상과 정부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을 통해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덤핑관세율을 부과 받고 있다. 일본은 2001년 발생한 중일 버섯분쟁에서 중국의 보복위협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이 의견을 주장하여, 중국으로부터 유리한 협상성과를 얻어내었다. 따라서 한국도 무역협상 전문가를 양성하고 무역마찰 발생 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기업은 정부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한 나라의 무역정책은 외국과의 교역을 활성화 시키면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 하는 상반된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모든 나라는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자국의 이익증대를 위한 무역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WTO 회원국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무역정책을 집행하고 있지만, 특히 주요 교역국인 중국의 무역정책을 잘 이해하고, 이에 기반을 둔 적절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중국으로의 수출은 해외투자과 마찬가지로 충분한 사전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즉 중국의 무역정책 및 관련 법제도에 대한 사전연구와 특정상품에 대한 시장분석을 통한 덤핑규제 가능성 검토, 동종 기업과 사전 조율을 통한 과다 경쟁 지양 등 사전준비 및 예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중국의 관련 산업계의 수입규제 동향 파악 및 무역정보의 신속한 입수를 위한 채널 확보, 중국의 수입자 그룹과의 교류를 통한 이해관계 형성을 해야 한다. 또한, 중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위해 동종 기업 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정보교류를 활성화고, 기업 간의 자율조정을 통한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⁶⁸⁾

제6장 결론

오늘날 국제무역의 무대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시장으로 되어 가고 있고, 국제간

68) 成鉞(2013). 「韓國 과 中國間 商事紛爭 解決에 관한 研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 논문

의 경제교류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무역 분쟁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한국과 중국은 우호근린의 관계이고 문화배경도 비슷하여 무역의 발전에 있어 양호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양국 경제의 발전 단계가 다르고 구조도 상이하여 경제 협조에 필요성과 현실성이 존재한다. 2012년으로 한중수교 20주년이 되었다. 불과 20년 만에 한국과 중국은 모든 분야에서 폭발적인 속도로 교류 협력관계를 확대 심화해 가면서 한국전쟁이후 형성된 적대관계를 빠르게 청산하고,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양국관계가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지리적 근접성과 더불어 오랜 역사를 통하여 축적된 문화적 동질성, 그리고 경제구조의 상호 보완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요인은 21세기 동아시아와 한반도 정세에 대해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공동이익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관계 영원히 계속될 수만은 없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오히려 양국 간의 전면적 동반자 관계가 발전하면서 상호 협력과 더불어 상호 갈등과 불신을 낳는 쟁점도 끊임없이 대두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차원에서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하면서 무역 분쟁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가 상호 보완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경쟁적인 측면도 많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은 한국의 시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무서운 경쟁자로 추월하고 있다는 중국이 한국 상사에게 가져다주는 위협을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중 무역 분쟁의 본질, 무역 분쟁의 발생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요인 그리고 한중 무역 분쟁의 발생현황 및 처리에 대해서 문헌연구에 의존하였으며 이는 기업 활동에 있어 무역 분쟁의 효과적인 대처 방안 및 예방대책을 모색하여 무역 분쟁 시에 기업의 국제 거래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었다.

또한 무역거래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게 됨으로 무역클레임이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무역 분쟁을 제기 당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크게는 국가의 이미지까지도 실추 당하게 된다. 따라서 무역클레임은 원칙적이고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무역 분쟁의 해결방안을 요약하자면, 첫째,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한다. 한·중 무역 분쟁의 가장 효율적이고 우호적인 해결방안은 당사자 자신의 적극적인 노력, 정부기관의 협조, 당사자 지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다. 둘

째, 중재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다. 제3자를 통하여 유효한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무역 분쟁의 해결방법은 소송이나 중재이다. 그러나 시간이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중재가 효율적인 무역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또한 해결방안 보다 더 중시해야 하는 문제는 예방대책이다. 철저히 사전 신용조사를 통하여 재무상태, 거래능력, 그리고 성실성 등을 정확히 파악한다. 그리고 물품매매계약을 반드시 작성하며, 계약서 작성 시에는 거래상의 제반 조건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계약 내용에 이해 부족으로 인한 무역 분쟁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분쟁관련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하고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약정해야 할 것이다.

분쟁발생의 원인이 되는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의 제반 예방대책 수립과 시행도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기업이 대중국 거래에서 발생한 무역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지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무역관련 유관기관의 협조 그리고 대사관 등과 같은 정부기관의 협조가 병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재나 소송보다는 무엇보다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의 우호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없는 무역 분쟁일 경우에도 소송보다는 중재에 의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과 중국기업간의 거래관계를 유지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상호 합의된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상호 믿음과 신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상관행이 뿌리 내리게 된다면 양국 간 무역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며, 한국과 중국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감소청·왕해란(2001), 「중·한 무역관계의 회고와 전망」, 대외무역출판사
- 강가휘(2009), 「한중 통상 분쟁 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김경배(2005), 「국제무역분쟁과 ADR」, 무역경영사, .
- 김광수(2010), 「최근 중국 중재의 동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논문집, p.3, p.6.
- 김권형(2007), 「농수산물 유통공사'한중농산물 교역 확대 방안」, 농수산물 무역정보.
- 김상호(1992), 「무역거래상의 클레임 발생과 당사자의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국제상학, 14권 2호, p598~602.
- 김진(2008), 「한·중 무역관계에 관한 연구」.
- 두흔흔(2010), 「한·중 무역클레임의 발생원인과 그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덩샤오핑(1993), 「덩샤오핑문선 제3권」, 중국국민출판사.
- 덩샤오핑(1994), 「덩샤오핑문선 제2권」, 중국국민출판사.
- 리규택(2003), 「中韩贸易问题研究 [J]」, 亚太经济,
- 맹경의·유뢰(2004), 「중·한 무역협력의 현상 및 그 과거」, 세계경제출판사
- 박미영(2007), 「한·중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에 관한연구」. pp.51~57.
- 박병섭·송경석·신건훈·이병문·양정호(2003), 「무역실무」, p.86
- 박사룡(2001), 「통상관리의 원칙과 현실」, <무역규제>2001-7월 여름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 성성(2013), 「한국 과 중국간 상사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송유철·박지현(2002), 「한중 농산물 무역마찰과 대응방안」,오늘의 세계경기, 제 02-2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송아정(2011), 「한중 무역 분쟁의 시사점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손효진(2003), 「무역 용어와 수출계약의 관계」, 상업연구사, 제280기, p.28.
- 신군재(2006), 「부산지역 무역클레임 해결방법 선호도에 대한 실증연구」.

- 애화(2005), 「대책 중에서 전진-중·한 무역핫이슈투시」, 시대무역출판사
- 애화(2005), 「한국이 중국 수입반덤핑조사의 최대 목표국으로 되었다—중·한 경제 핫이슈 투시」, 시대무역출판사.
- 양림림(2004), 「중·한 무역협력의 대책연구를 강화, 흑룡강사회과학출판사」.
- 양영환·오원석(1997), 「무역상무론」, 법문사.
- 양영환·오원석(2002), 「최신무역상무론」, 법문사, p.132.
- 우옥용(2004), 「국제무역용어의 실제사용」, 상해상업직업기술학원학보, 5권 3기, p9.
- 이영·양진우(2005), 「시사 속람」, 시대무역출판사.
- 임정빈(2003), 「한중간 마늘을 둘러싼 무역 마찰의 경과」, KREI 세계농업, 한국 농촌 경제 연구원.
- 이승영, 이건형(2007), 「한중 통상 분쟁의 해결과 한국의 대응」.
- 왕소근(2003), 「중·한 무역발전의 주요 장애와 협력경로」, 세계경제연구출사.
- 완레이(2010), 「한·중 간 무역클레임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 논문, pp.41~43.
- 장보인·조홍거(2008), 「近期中韩经贸合作现状与前景分析」.
- 황동매(2004), 「중·한 무역 역차분석 및 개선구상」, 현대재정출판사.
- 장수흥(2004), 「중·한 무역문제탐석」, 현대관리출판사.
- 저우예페(2009), 「한중 무역 분쟁에 관한 연구: 한중 무역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pp.53~56.
- 주중국·황동매(2004), 「중·한 무역 역차분석 및 개선구상」, 현대재정출판사

기타참고문헌 및 홈페이지 자료

- 삼성경제연구소(2008), 「한중 무역구조 변화와 시사점」.
- 한국무역협회(2007), 「한국의 대중, 대일 무역수지 변동요인 분석」.동향분석실.
- 한중무역의 현황과 문제점(2008)
- 한국무역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2010)

한국외교통상부 보도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내부자료, 「무역클레임」.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전계자료 참조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08호, pp.109~112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사건번호: 제03113-0023호, 2003년

대한상사중재원, 무역계약서의 청약의 성립과 소멸, 「중재」제 284호, 1997, pp.99~104

KIEP(2007), 2006 「년 대중 무역 흑자 감소의 원인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중국 무역클레임」, kotra 내부교육자료, p.53

중화인민공화국 주 대한민국 대사관 미 발간 자료 및 경제상무 담당영사 인터뷰 내용 (2007)

人民出版社(2008), 「国别贸易投资报告2007」.

中国发展出版社(2009), 「韩国的经济发展」.

한국 국제무역 협회 www.Kita.org

대한상사중재원 2010년 자료 참조,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무역클레임 실태조사”, <http://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사례집, 2003년, 사건번호:03112-0002호, www.kcab.or.kr

대한상사중재원, 계약서작성의 기초지식 자료 참조정리, <http://www.kcab.or.kr>

중국 해관(海关), www.customs.gov.cn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자료 정리, www.cietac.org

중국 경제 통계 홈페이지, <http://ceds.database.ce.cn>